



New York City Comptroller
Scott M. Stringer

이민자 권리와 서비스 안내서

뉴욕 시 이민 생활을 위해 알아야 하는 중요한 정보

2018 년
Korean Version





New York City Comptroller Scott M. Stringer

뉴욕시민 여러분:

뉴욕 시는 수 세기 동안 이민자들의 희망과 기회의 등불 역할을 하면서 세계 각지의 무수히 많은 이들에게 보다 나은 미래의 가능성을 제시해 왔습니다. 스스로 더 나은 삶을 일구어 나가고자 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든 그 출신국에 관계없이 뉴욕 시에서 환영받는다 사실에는 언제나 변함이 없습니다. 이곳에 거주하는 330 만 이민자들의 꿈과 열원은 뉴욕 시의 문화를 정의하는 동시에 매일매일 시의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습니다.

한편, 2018 년 뉴욕 시의 이민 커뮤니티는 불안감에 휩싸이게 되었습니다. 오늘 뉴욕 시 감사원장실에서 최신 발행한 이민자 권리와 서비스 안내서를 소개하는 것도 바로 이러한 어려운 환경에 대처하기 위함입니다. 본 안내서는 당 감사원장실에서 2015 년부터 발간해온 자료 안내 책자로, 현재 총 8 개의 언어(벵골어, 중국어, 프랑스어, 한국어, 아이티 프랑스어, 러시아어, 스페인어, 영어)로 제공됩니다. 금번 개정 안내서에는 다섯 개 보로(borough) 내 이민 커뮤니티와 관련된 정보가 수록되어 있습니다. 나아가서, 정부의 모든 차원에서 이민 정책이 변경됨에 따라 2018 년판 안내서에는 불법 이민자의 권리, 증오 범죄 신고 방법, 혜택 관련 질문에 대한 답변, 그리고 뉴욕 시와 같은 “서류미비 이민자 보호 도시”의 혜택(및 제한)에 관한 새로운 항목도 포함되었습니다. 안내서에는 다음에 대한 자료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 국외 추방을 염려하는 사람들을 위한 긴급 연락처
- 법률 및 사회 복지 서비스 제공자
- 공익 프로그램
- 근로자 권리
- 소기업 지원
- 소비자 권리
- 뉴욕 시에서 거주하는 이민자들과 관련된 다양한 기타 이슈

본 안내서는 뉴욕 시의 이민자들이 법 & 정치와 관련하여 가질 수 있는 질문 각각에 대한 답을 제공하기 위해 제작된 것이 아니며, 변호사가 법률 상담을 필요로 하는 이민자에게 제공해줄 수 있는 지침을 대체하지도 않습니다. 그러나 본 안내서는 이 불확실하고 어려운 시기에 특정 이슈를 명확히 하고 이민자들(특히 최근에 뉴욕 시에 온 이민자들)이 시 법과 정부 및 기타 사회 복지 서비스 제공자들로부터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방법에 관해 가질 수 있는 질문 중 일부에 대한 답을 얻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미국의 이민 정책은 대부분 연방 정부 차원에서 수립되기 때문에 시 공무원이 통제할 수 없지만, 저는 시 정부 지도층의 일원으로서 언제나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서 이민자들이 가정에서 안전함을 느끼고 안심하며, 뉴욕 시에서 꿈을 이룰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 만약 시 법과 정책의 개선이 필요할 경우, 이민자 및 커뮤니티 지도자들과 하나가 되어 이러한 변화를 추진하겠습니다.

본 안내서에 관한 문의 사항이나 다른 문제가 있으실 경우, 뉴욕 시 감사원장실의 공동체 행동 센터(Community Action Center)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이메일: action@comptroller.nyc.gov 전화: 212-669-3916).

감사합니다.



Scott M. Stringer

안내 말씀

뉴욕 시 감사원장실은 정확하고 신뢰성 있는 정보를 담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본 안내서에 기재된 정보의 내용에 대한 정확성, 신뢰성, 완전성에 대해서는 어떤 보증, 보장 혹은 대변을 하지 않습니다. 뉴욕 시 감사원장실은 모든 인쇄물의 사용 혹은 신청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으며 착오 혹은 누락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만약 귀하가 특별한 정보를 찾거나 신청과 관련한 도움이 필요한 경우, 정부 기관 혹은 해당되는 경우 비영리단체와 직접 접촉하시기 바랍니다. 만약 이민 신분에 관한 정보를 찾으신다면 유능한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구하셔야 합니다.

주소 변경, 내용 추가, 의견 등은 다음 주소로 보내주십시오.

New York City Comptroller Scott M. Stringer
Office of Public Affairs
One Centre Street, 5th Floor
New York, NY 10007

P: (212) 669-3916

F: (212) 669-2707

E: action@comptroller.nyc.gov

W: www.comptroller.nyc.gov

목차

| | |
|------------------------------|----|
| 뉴욕 시 감사원장 인사말..... | 2 |
| 목차 | 5 |
| 자신의 권리 알기 | 6 |
| 이민자를 위한 혜택 및 서비스 접근 장려 | 9 |
| 언어 이용 권리..... | 11 |
| 추방과 구금..... | 13 |
| 공공혜택..... | 17 |
| 건강 관리..... | 22 |
| 교육 | 25 |
| 가정폭력과 학대 및 인신매매..... | 38 |
| 증오 범죄..... | 39 |
| 근로자 권리..... | 41 |
| 세금 신고..... | 51 |
| 주택 | 53 |
| 시민권 | 54 |
| 영주권 | 59 |
| 이민에 관한 행정 조치 | 60 |
| 투표와 참여..... | 62 |
| 소비자 권리와 금전적 권리..... | 68 |
| 이민 서비스..... | 71 |
| 소규모 사업..... | 76 |
| 리소스 디렉토리 | 81 |

자신의 권리 알기

모든 사람은 이민 신분에 관계없이 중요한 법적 권리를 가집니다. 귀하의 권리와 더불어 귀하 자신 및 가족을 보호하기 위해 해야 하는 일에 대해 알아보십시오.

이민법 집행은 어떻게 달라졌습니까?

이민세관집행국(Immigration and Customs Enforcement, ICE)은 이민법 집행을 담당하는 주요 연방 정부 기관입니다. ICE 는 합법적인 이민 신분을 갖추지 않은 자 및 신분은 갖추었으나(예: 영주권자 / “그린카드 보유자,” 난민 등) 특정 범죄 전과를 가지고 있는 자를 강제 추방할 수 있습니다. 2017 년 1 월 25 일에 트럼프 대통령은 ICE 의 구금 및 추방 우선권을 확대하는 새로운 행정명령을 내렸습니다. 이는 이제 추방 가능한 특정 이민자들이 추방될 가능성이 현저하게 높아졌음을 의미합니다.

새로운 여행 제한이 생겼습니까?

2017 년 3 월 6 일, 트럼프 대통령은 난민과 특정 국가 출신의 사람들이 미국으로 여행하는 것을 제한하는 행정명령을 내렸습니다. 그러나 곧바로 이를 상대로 한 소송이 제기되었으며, 연방 법원은 해당 명령을 중지시켜서 소송이 해결되기 전까지는 효력을 발휘하지 못하도록 했습니다. 본 안내서 발간 후 여행 제한이 발효되었는지 확인하려면 이민 전문 변호사와 상담하거나 뉴욕이민연합(New York Immigration Coalition, (212) 627-2227)에 문의하십시오.

이민자의 경우, 합법적인 이민 신분을 갖추고 있다고 하더라도 미국 이외의 국가로 여행하기에 앞서 반드시 이민 전문 변호사나 이민민원위원회(Board of Immigrant Appeals)의 공인 대리인과 상담해야 합니다.

미국 국내 또는 해외 여행을 계획 중이라면 정부에서 발급한 신분증(예: 운전면허증, 여권, 그린카드나 비자 서류와 같은 유효한 이민 서류)를 지참하십시오. 귀하의 변호사가 동석하지 않은 경우, 그린카드를 넘겨주거나 어딘가에 서명하지 마십시오. 그린카드를 포기하는 양식에 서명하라는 요청을 받았을 경우 반드시 이를 거부해야 합니다.

공항 직원들은 귀하의 소지품과 귀하의 몸을 수색할 권한을 가집니다. 수색 시 이를 신중히 지켜보고 수색 세부 사항(공항 직원의 이름 및 신원 정보 포함)을 기록해두십시오. 그리고 몰수된 소유물에 대한 영수증을 요청하십시오.

추방 위기에 처해서 변호사가 필요할 경우, 뉴아메리칸핫라인(New Americans Hotline) 주 사무소((800) 566-7636)로 전화해서 변호사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ICE 의 체포 대상은 어떻게 됩니까?

법에 따라 연방 정부는 다음을 포함한 특정 이민자를 추방할 수 있습니다.

- 1) 서류미비 이민자(합법적인 이민 신분을 갖추지 않은 자).
- 2) 합법적인 이민 신분(예: 영주권자, 난민, 비자 소유자)은 갖추었으나 특정 범죄 전과를 가진 자.

이민법집행관이 접근하면 어떻게 행동해야 합니까?

모든 상황에서

- 귀하에게는 묵비권이 있습니다. 묵비권을 행사하고자 할 경우 이를 크게 말할 수 있습니다.
- 도망치지 마십시오.
- 귀하는 핸드폰을 사용해서 상황을 기록하고 사진을 촬영할 수 있으며, 상황을 동영상으로 녹화할 수도 있습니다. 사진 촬영이나 동영상 녹화는 반드시 공개적으로 해야 하며(비밀리에 해서는 안됨) 집행관의 행동을 방해해서는 안됩니다. 또한, 이민법집행관과 마주쳤을 때 핸드폰에 손을 뺀 것이 안전한지 여부를 판단해야 합니다.
- 거짓말을 하지 마십시오. 허위 서류나 유효하지 않은 서류를 보이지 마십시오.
- 귀하에게는 변호사와 이야기를 나눌 권리가 있습니다.
- 변호사와 이야기를 나누지 않고는 아무 데나 서명하지 마십시오.

공공 장소에 있을 경우

- 귀하의 이름 또는 다른 정보를 말하기에 앞서 “가도 됩니까?”라고 물어보아야 합니다. 집행관이 그렇다고 답할 경우 자리를 뜰 수 있습니다. 집행관이 아니라고 답할 경우에는 자리를 뜨지 마십시오. 집행관에게 귀하가 묵비권을 행사하고자 하며 변호사와 이야기를 나누고 싶다고 말하십시오.
- “자신의 권리 알기 카드(Know Your Rights Card)”를 가지고 있을 경우 카드를 보여줄 수 있습니다.

자택에 있을 경우

- ICE 직원은 종종 자신을 “경찰”이라고 소개한다는 점에 유의하십시오.
- 문을 열기 전에 이민법집행관이냐고 물어보십시오. 정중하게 “지금은 이야기를 나누고 싶지 않습니다”라고 말씀하십시오.
- 문을 열지 않은 상태에서, 판사의 서명이 담긴 영장을 가지고 왔냐고 물어보십시오. 집행관이 그렇다고 답할 경우, 영장을 문 아래로 밀어 넣거나 창문에 보여 달라고 요청하십시오. 집행관이 판사의 서명이 담긴 영장을 가지고 있지 않다면 들여 보내주지 않아도 됩니다.

ICE 와 마주쳤을 때의 권리에 관한 자세한 정보를 확인하거나 뉴욕 시에서 실시된 ICE 집행 활동에 대해 신고하려면 이민자 보호 프로젝트(Immigrant Defense Project, (212) 752-6422)로 연락하십시오.

이민자를 위한 혜택 및 서비스 접근 장려

뉴욕 시는 모든 거주자가 이민 신분에 관계없이 편안한 마음으로 시의 주요 서비스(예: 의료 서비스, 공립 학교, 특정 공익, 긴급 구조대, 경찰의 보호)와 다른 여러 서비스 및 혜택을 누릴 수 있게 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시 직원들은 서비스나 혜택 적격성 판단을 위해 정보가 필요하거나, 법에 따라 요구되지 않는 한 이민 신분을 물어볼 수 없습니다. 뉴욕 시는 법으로 정해진 일부 상황을 제외하고는 이민 신분을 기밀로 유지할 것을 요합니다.

또한, 뉴욕 시는 법적으로 요구되는 일부 상황 외에는 연방 정부의 연방이민법 집행을 돕지 않습니다. 아래 제시되어 있는 시장 직속 이민업무국(Mayor's Office of Immigrant Affairs) 웹사이트에서 시의 이민자 지원 및 보호 정책에 관한 자세한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http://www1.nyc.gov/site/immigrants/programs/social-economic/immigration-enforcement.page>.

이민자들의 시 서비스 접근을 장려하는 핵심 시 정책은 바로 행정명령 41 입니다. 행정명령 41 에 따라 뉴욕 시는 서류미비 이민자를 포함한 모든 이민자들이 시에서 제공하는 서비스와 혜택 및 프로그램에 참여하기를 권장하고 있습니다. 또한 행정명령 41 은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시공무원들에게 이민자들의 이민 정보를 비롯한 기타 정보들에 대한 기밀 보장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정부 혜택 및 서비스 중 일부는 특정 유형의 이민 신분 소지자만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시공무원들은 귀하의 적격성을 알아보기 위해 이민자 신분에 대한 질문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나 건강, 안전, 교육과 같은 다수의 서비스들은 서류미비 이민자를 포함한 모든 신분의 이민자에게 제공되고 있습니다. 서류미비 이민자들을 위한 서비스 목록은 16 페이지에 있는 “공공 혜택(Public Benefits)”에서 찾으실 수 있습니다.

행정명령 41 은 무엇을 요구합니까?

- 귀하가 범죄의 목격자 혹은 희생자가 되거나 도움을 청하기 위하여 경찰서에 전화 혹은 접근하는 경우, 경찰은 귀하의 이민 신분에 대해서 질문할 수 없습니다.
- 그러나 경찰이 불법행위 혹은 범죄행위에 대해서 의심하고 있을 경우, 이민자들의 이민 신분에 관해 묻거나 그 정보를 공개하도록 요구할 수도 있습니다.

- 귀하가 시 기관에 특정 서비스나 혜택에 대해서 요청할 경우, 시공무원들은 귀하가 그 서비스나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를 결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또는 법률에 의하여 요구되는 경우 외에는 귀하의 이민 신분에 대해서 질문할 수 없습니다.
- 만약 귀하가 이민 신분이나 다른 중요한 정보를 시공무원과 공유하고 있다면, 시 직원들은 법에 의해 요구되는 제한된 경우를 제외하고, 그 정보를 어느 누구에게도 보고하지 않습니다.

행정명령 41 의 위반사항에 대해서 불만을 가지고 계시다면, 위반을 했다고 생각되는 시청 부서에 직접 항의하거나, 시장 직속 이민업무국(311 번)에 전화할 수 있습니다.

뉴욕 시의 공립 학교 및 이민법 집행 협약

2017 년, 뉴욕 시는 시 공립 학교를 학생과 가족들에게 안전한 장소로 만들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공립 학교의 연방법집행관(이민법집행관 포함) 요청 대응 방법에 관한 협약을 발표했습니다. 이 협약에 따라, 연방법집행관이나 이민법집행관이 공립 학교에 접근할 경우 학교는 해당 집행관에게 방문 목적에 관한 세부 정보 및 서류나 영장 소지 여부를 물어본 후 교직원들이 뉴욕 시 교육부(New York City Department of Education, DOE)의 변호사와 상의하는 동안 학교 건물 외부에서 대기하라고 지시합니다. 공립 학교는 해당 집행관에게 어떤 정보도 제공하지 않으며, 법에 따라 전적으로 요구되지 않는 한 학교 출입을 허가하지도 않습니다.

아래 링크에서 협약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http://schools.nyc.gov/AboutUs/schools/SupportingAllStudents/Immigration+Guidance+for+Principals.htm>

언어 이용 권리

영어로 말하거나 읽는 데 어려움이 있는 사람들은 학교나 건강진료소, 사회보장기관을 포함해 정부기관에 번역 혹은 통역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여러 사안의 경우 자녀 및 친지들에게 통역을 맡기는 것은 부적절합니다. 다수의 정부기관에서는 법률에 의하여 영어가 아닌 타 언어로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언어 접근은 다음과 같은 사항을 포함합니다.

- “번역”이란 글로 쓰인 문서를 번역한다는 의미입니다. 중요한 편지, 통지, 지시사항 및 기타 서류를 다른 언어로 번역하는 경우가 이에 해당됩니다.
- “통역”이란 음성 정보를 말로써 다른 언어로 통역한다는 의미입니다. 통역자가 직접 참석한 회의나 전화상의 통역이 이에 해당됩니다.

지역법 제 73 편: 인적 서비스에 대한 동등한 접근

지역법 제 73 편은 뉴욕시의 4 개 보건후생기관이 서비스를 시행함에 있어서 특정한 다수의 언어접근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아래의 기관은 지역법 제 73 편을 따라야만 합니다.

- 인적자원부(Human Resources Administration, HRA)
- 보건위생국(Department of Health and Mental Hygiene, DOHMH)
- 아동보호청(Administration for Children’s Services, ACS)
- 홈리스복지국(Department of Homeless Services, DHS)

영어가 능숙하지 않은 분들이 위의 기관에서 도움을 얻고자 할 때는 무료로 특정 종류의 언어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위의 기관들은 직업안내소, 푸드스탬프 사무소, 의료지원소 및 사회복지사무소를 운영합니다.

위의 각 기관들은 그들이 제공하고 있는 언어적 지원을 규정한 방침이 있습니다. 귀하가 푸드스탬프, 메디케이드(Medicaid) 등의 다양한 혜택을 받는 것을 돕는 인적자원부(HRA)는 특정 주요 문서를 중국어, 스페인어, 아랍어, 아이티 프랑스어, 한국어, 러시아어로 제공해야 합니다. 또한 인적자원부는 언어적 지원이 필요한 사람들이 서비스를 받을 때 다른 사람들에 비하여 지나치게 오랜 시간 기다리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DHS, ACS, DOHMH 는 실제적인 도움이 되는 언어 지원과 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합니다.

행정명령 120: 언어 이용

시장행정명령 120 은 공공 서비스를 직접 제공하는 모든 시 기관이 통역과 번역 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사람들에게 실제적인 서비스를 무료로 제공해야 한다는 것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모든 시 기관은 2009 년 1 월부터 언어 이용에 대한 방침을 시행하여야 합니다. 또한 이 기관들은 뉴욕 시 거주자들이 가장 많이 사용하는 6 대 언어로 서비스를 지원하여야 합니다. 지원 언어는 뉴욕 시 도시계획부가 미국 통계국 데이터를 사용해서 결정합니다.

시 기관의 무료 언어 서비스에 대하여 더 많은 정보를 얻기 위해서는 311 번으로 전화하여 귀하가 원하는 특정 부서로 연결을 요청하거나, 시장 직속 이민업무국에 도움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추방과 구금

누가 국외추방의 위험에 처하게 되는가?

미국 시민권자가 아닌 사람들은 유죄판결을 받거나, 이전에 추방명령을 받고 집행되지 않았거나 혹은 단순히 서류미비 이민자라는 사실만으로도 추방될 수 있으며, 영주권자도 이에 해당됩니다. 형사범으로 유죄판결을 받은 경우에는 경미한 범죄, 과거의 범죄 혹은 유치장이나 교도소에 가지 않았더라도 추방될 위험이 있습니다.

귀하가 추방될 위기에 처하게 되어 변호사가 필요하다면, 추방 관련 전문 변호사를 찾아야 합니다. 만약 귀하가 형사 유죄판결을 받은 경우, 추방뿐만 아니라 형사법도 이해하는 전문 변호사가 필요합니다. 추방 사건과 관련한 법률 서비스에 대한 정보가 필요하다면 본 안내서 부록을 참고하십시오.

2010 년 대법원의 판결(*Padilla v. Kentucky* 사건)에 따라, 형사피고인 측 변호사는 범죄혐의로 기소되는 것은 이민에 부정적인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는 사실을 의뢰인에게 알려야 합니다. 즉, 형사피고인 측 변호사는 의뢰인에게 유죄 판결을 받으면 의뢰인이 추방 가능 상태가 되며, 이민자 구금의 대상이 되고, 법적 신분이나 시민권을 획득할 수 없게 되거나, 국외 여행 후 안전하게 귀국할 능력에 영향을 받게 될 수 있다는 것을 알려야 합니다. 피고인 측 변호사가 이를 알려주지 않을 경우, 의뢰인은 유죄를 인정했더라도 유죄 판결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민자 구금의뢰서에 대한 뉴욕 시의 제한

2014 년 지역법 58 편 및 59 편의 통과로, 뉴욕 시가 이민국 및 세관집행처(Immigration and Customs Enforcement, ICE)가 보낸 구금의뢰서를 존중하여야 하는 사례에 대한 제한이 강화되었습니다. 구금의뢰서는 ICE 가 구속하려고 하는 사람을 구금하여 줄 것을 요청하며 뉴욕 시 혹은 뉴욕 주에 보내는 것입니다. 법률은 일반적으로 뉴욕 시 경찰국(New York City Police Department, NYPD)과 교정국(Department of Correction, DOC)이 대부분의 경우(모든 경우는 아님) 이민자 구금의뢰서를 응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이제 NYPD 와 DOC 는 다음의 경우에만 이민 구금의뢰서를 응할 것입니다.

- ICE 가 그 사람을 구속할 사유가 있음을 확인할 수 있는 연방판사가 서명한 영장을 제시하였을 때

- 그 사람이 체포한 날로부터 지난 5년 이내에 “폭력적 혹은 중대한 범죄”로 유죄판결을 받았거나, 테러주의인물 명단에 수록된 인물일 가능성이 있을 때

법률은 또한 ICE 가 라이커즈 섬의 교정시설에 사무소를 가지는 것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구금이 되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귀하가 이민국에 구금되었다면, 귀하의 이민신분에 관하여 말하거나, 귀하의 이민 청문에 관한 권리 혹은 다른 권리를 포기하는 서명을 하는 것이 강제로 요구되지 않습니다. 귀하는 귀하의 신분에 관한 질문에 대하여 답변을 하지 않을 권리가 있습니다. 변호사와 이야기를 나누지 않고는 그 어떤 문서에도 서명해서는 안 됩니다.

만약 귀하의 가족이나 사랑하는 누군가가 구금이 되었다면 그 사람의 이름, 가명, 외국인 등록번호, 생년월일, 미국 입국 날짜, 전과 기록, 과거와 현재의 이민 및 형사 전문 변호사 연락처 정보, 그리고 그 밖의 모든 이민관련 서류를 확실히 보관하고 있어야 합니다.

귀하의 가족이나 사랑하는 누군가가 구금되었는지 확인하려면, 이민세관집행국(Immigration and Customs Enforcement Office)에 알아보시면 됩니다. 또한, 영사관에 연락할 수도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개별 구금소에 확인하셔도 됩니다. 더 자세한 정보를 원하시면 구금감시망(Detention Watch Network)의 웹사이트에 접속하셔도 됩니다.

| 이민세관집행국(Immigration and Customs Enforcement) | |
|--|----------------|
| 뉴욕 | (212) 264-4213 |
| 뉴저지 | (973) 645-3666 |

| 무료 법률 상담 | |
|--|----------------|
| Executive Office for Immigration Review (EOIR) 무료 법률 서비스 제공자 목록: https://www.justice.gov/eoir/list-pro-bono-legal-service-providers | |
| New York Immigration Coalition 저비용 이민 서비스 제공자 목록: http://www.thenyic.org/sites/default/files/Low_Cost_Immigration_Service_Providers_1.10.2017.pdf | |
| New York State Office for New Americans/Liberty Defense Project | (800) 566-7636 |

| | |
|---|-----------------------------------|
| Legal Aid Immigration Law Unit | (212) 577-3456(수, <u>금요일 오후</u>) |
| Immigrant Defense Project (범죄자 이민 문제에 관한 정보 & 소개에 한함, 직접 대리는 하지 않음) | (212) 725-6422 |
| Bronx Defenders | (718) 838-7878 |
| Brooklyn Defender Services | (718) 254-0700 x100 |

구금자와 가족을 위한 비법적 지원 및 자세한 정보를 원하시면 (646) 290-5551 번으로 연락하십시오.

영사관 목록: <http://www.citidex.com/252.htm>

구금 관련 자세한 정보를 원하시면 구금감시망(Detention Watch Network) 웹사이트

www.detentionwatchnetwork.org 를 방문하십시오.

구금 상태인 억류자의 위치를 확인하시려면 <https://locator.ice.gov/odls/homePage.do> 를 방문하십시오.

주지사 특별사면이란 무엇입니까?

뉴욕 주지사는 사면을 승인하여 유죄 판결 관련 결과 중 일부를 삭제해줄 수 있습니다. 합법 이민자(예: 그린카드 보유자)든지 서류미비 이민자든지 간에, 사면은 강제로 추방되거나 법적 신분에 장애가 생기는 것을 방지하도록 지원합니다.

누가 사면을 청원할 수 있습니까?

뉴욕 주 법원에서 범죄 행위(또는 위반)으로 유죄 판결을 받은 사람은 누구나 사면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https://www.ny.gov/services/apply-clemency> 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주지사 특별사면이 있다고 해서 모든 경우에 더 이상 이민과 관련된 어떤 결과도 발생하지 않을 것임을 보장해주는 것은 아닙니다. 심지어 사면은 이민 목적의 특정 죄를 완전히 없애주지도 못합니다. 그러나 사면은 서류미비 이민자의 법적 신분에 생기는 형사상의 장애를 제거해주거나, 유죄 판결을 받은 합법 이민자의 추방 또는 강제 추방 위험을 없애줄 수 있습니다.

사면이 귀하의 이민 사례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방법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이민자 보호 프로젝트(Immigrant Defense Project, 212-725-6422/info@immdefense.org)에 문의하십시오.

추방을 면하기 위한 사면 청원은 어떻게 합니까?

사면을 청원하기 위해서는 사면을 받아야 하는 이유를 설명할 수 있는 정보를 가능한 많이 준비하여야 합니다. 아래 사항들이 그러한 정보에 해당합니다.

- 이름, 주소, 전화번호, 생년월일, 소셜시큐리티 번호 혹은 외국인등록 번호와 같은 개인 신상정보
- 이민 절차가 진행 중인가 여부 및 진행상황
- 범행 장소, 판결날짜와 형량 등을 포함하는 판결선고의 성질
- 훌륭한 인성을 보여줄 수 있는 재활을 위한 이력 혹은 증거
- 미국과의 유대관계에 대한 자세한 서술
- 추방이 귀하와 귀하의 가족에게 미치는 영향

청원서 보낼 곳:

Executive Clemency Bureau
New York State Department of Corrections and Community Supervision
The Harriman State Campus – Building 2
1220 Washington Avenue
Albany, NY 12226-2050

혹은 귀하의 신청서 전체를 스캔하여 아래 주소로 이메일 발송하십시오.

PardonsAndCommutations@doccs.ny.gov

사면 이후의 절차

주지사로부터 사면을 받은 경우, 추방을 면하기 위해 추가적인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그 절차 중 하나는 귀하의 이민 절차가 진행되는 법원에 사면 증명을 제출해야 합니다.

공공혜택

어떠한 공공혜택이 이민자들에게 주어집니까?

이민 신분과 관계없이, 모든 사람들에게 많은 중요한 서비스와 혜택이 주어집니다. 그 중 일부 서비스는 긴급 상황 시 필요한 것입니다. 아래 열거된 서비스가 서류미비 이민자를 포함한 모든 사람들에게 주어집니다.

- 19 세 미만 어린이들은 뉴욕 주 아동 건강보험 프로그램(State Children's Health Insurance Program, SCHIP)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임산부, 5 세 미만 어린이, 6 개월 이하 아기(모유 수유 시 12 개월)의 어머니는 여성, 신생아 및 어린이 프로그램(Women, Infants and Children Program, WIC)에 따라 영양 교육, 영양식, 모유 수유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산전 관리 프로그램(Prenatal Care Program, PCAP)에 따른 임산부를 위한 산전 관리
- 앰블런스 서비스를 포함한 응급 의료 서비스
- 가정폭력 상담
- 예방주사
- HIV 테스트 및 상담
- 긴급대피소
- 독극물 관리 핫라인
- 식료품 저장실 운영
- 어린이 복지와 위탁양육 서비스
- 공공교육 서비스
- 학교 조식과 중식 서비스
- 노인복지부 제공 경로 서비스 및 경로센터 프로그램
- 소비자 상대 사기에 대한 소비자 민원국의 보호
- 차별에 대한 인권위원회의 보호
- 공원 및 여가 관리부의 시설 및 서비스
- 보건정신위생부 제공 서비스
- 공공도서관 서비스 및 특별행사
- 대중교통
- 경찰의 보호
- 화재 방지

다음과 같은 혜택들은 미국 시민권자나 “합법적으로 거주하는” 특정 법적 지위를 지닌 사람들만이 받을 수 있습니다.

- 기본생활비 보조(SSJ: Supplemental Security Income)
- 식품배급권
- 현금보조
- 공공 주택
- 섹션 8 아파트 입주권 바우처
- 비응급 메디케이드

기본생활비 보조(SSJ)란 무엇입니까?

- 기본생활비 보조(SSJ)는 저소득의 65 세 이상의 노인, 시각장애인 혹은 장애인에게 현금을 보조하는 것입니다.
- SSJ 를 받는 사람들은 자동적으로 메디케이드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사회보장사무처(Social Security Administration)의 어느 지부에서든지 혹은 전화(800) 772-1213 로 기본생활비 보조(SSJ)를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식품배급권이란 무엇입니까?

- 식품배급권이란 보조적 영양지원 프로그램(Supplemental Nutrition Assistance Program, SNAP)으로 불리며 저소득층이 식품을 구매할 수 있도록 쿠폰이나 전자 혜택지불(EBT) 카드 형식의 현금 혜택입니다.
- 뉴욕 시에서는 인적자원관리부(HRA)가 식품배급권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인적자원 관리부 나 식품배급권 사무소에서 식품배급권을 신청하면 됩니다.
- 부모가 식품배급권을 받을 자격이 없다고 하더라도, 자녀가 식품배급 권을 받을 자격이 있다면 자녀들을 위한 식품배급권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식품배급권 신청은 전화 311 번으로 하거나 인적자원관리부 온라인 웹사이트 <http://www1.nyc.gov/site/hra/help/snap-benefits-food-program.page> 를 방문 바랍니다.

현금보조란 무엇입니까?

현금보조란 뉴욕 시에서 저소득층에게 현금을 지급하는 프로그램으로 이들이이 자립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프로그램입니다.

현금보조 또는 다른 공공보조를 신청할 수 있는 뉴욕 시 취업센터를 찾으려면 HRA 웹사이트 <http://www1.nyc.gov/site/hra/locations/job-locations.page> 를 방문 하거나 311 번으로 전화 바랍니다.

공공 주택이란 무엇입니까?

공공 주택이란 특정 저소득층에게 제공되는 정부소유 주택입니다.

섹션 8 주택 바우처란 무엇입니까?

섹션 8 주택 바우처란 주택 임대료의 일부를 지원하는 혜택입니다. 특정 저소득층에게만 주택 바우처가 지급되고, 특정 주택 소유주만 주택 바우처를 받을 수 있습니다.

공공주택과 섹션 8 주택 바우처에 관한 자세한 내용을 원하면 아래 뉴욕 시 주택 관리국(New York City Housing Authority, NYCHA) 사무실 중 한 곳 혹은 <http://apply.nycha.info> 를 방문하십시오.

| | |
|-------------------------------|---|
| Manhattan/Bronx | 478 E. Fordham Rd., 2 nd Floor Bronx, NY 10458 (718) 707-7771 |
| Brooklyn/Staten Island | 787 Atlantic Ave., 2 nd Floor Brooklyn, NY 11238 (718) 707-7771 |
| Queens | 90-27 Sutphin Blvd., 4 th Floor Jamaica, NY 11435 (718) 707-7771 |

공공주택 지원서는 아래로 보내십시오.

NYCHA
Post Office Box 445
Church Street Station
New York, NY 10008

뉴욕 시 주택및보존국(Housing and Preservation Department, HPD)이 지급하는 섹션 8 바우처에 대한 정보는 (917) 286-4300 으로 전화하십시오.

공공주택에 관한 상세한 정보는 주택란(53 페이지)을 참고하십시오.

메디케이드란 무엇입니까?

메디케이드는 소득과 자원이 제한된 사람들의 의료 비용을 지원해주는 프로그램입니다. 고액의 치료비가 부과되었거나, SSI 를 수령하거나, 특정 재정 요건을 충족하면 메디케이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메디케이드 헬프라인((800) 541-2831)에 문의하십시오.

뉴욕 시 ID: IDNYC CARD

2014 년 뉴욕 시는 이민 신분과 관계없이 모든 뉴욕 시 주민에게 “IDNYC”라고 부르는 뉴욕 시 ID 카드를 발급하는 법을 통과시켰습니다. IDNYC 카드는 사진이 부착된 증명서로 다목적으로 사용 가능합니다. 시 정부에서 시행하는 프로그램과 서비스에 접근하고, 시청사(학교 건물 포함)로 들어가며, NYPD 경찰관과의 상호소통, 특정 금융기관에서 체크카드 계좌 개설과 여타 많은 혜택을 받기 위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IDNYC 카드의 그 외 용도에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 영화관, 브로드웨이 쇼, 스포츠 경기, 테마 파크 등 오락시설 입장 할인
- 25~61 세 성년을 대상으로 NYC 파크 레크리에이션 센터 연간 & 6 개월 회비 10% 할인 및 NYC 파크 테니스 허가권
- 뉴욕 시 소재 22 개 YMCA 센터 가족회비 20% 할인
- 월~금요일 오전 7 시부터 오후 7 시 사이, 뉴욕 시 식품 바자 슈퍼마켓에서 모든 구매액의 5% 할인
- 뉴욕 Pass 와 뉴욕 시 83 개 관광명소 입장권의 25% 할인
- 뉴욕 시의 다수 금융기관에서 은행계좌 개설
- 박물관, 행위예술센터, 콘서트홀, 식물원, 동물원 등을 포함한 뉴욕 시의 40 개 문화시설의 무료 1 년 회원권

혜택에 대한 전체적인 내용은 아래에서 확인하십시오.

<http://www1.nyc.gov/site/idnyc/benefits/benefits.page>

IDNYC 카드 발급신청은 어떻게 합니까?

IDNYC 카드 발급을 받으려면 신청서를 작성하여 IDNYC 등록센터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청서는 손으로 서명을 하여야 하며, 직접 제출하여야 합니다. 온라인으로 제출할 수는 없습니다.

방문약속은 전화 311 번 혹은 www.nyc.gov/IDNYC 에서 할 수 있습니다. 14 세 이상의 모든 뉴욕 주민은 IDNYC 카드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자는 신분 증명과 뉴욕에 거주하고 있다는 증명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분과 거주에 대한 사실을 증명하는 여러 가지 많은 종류의 문서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IDNYC 카드는 모든 뉴욕 주민에게 무료로 발급됩니다. 카드는 발급이 승인된 날로부터 5 년간 유효합니다. 영어가 미숙하거나 장애를 가진 사람도 신청절차에 접근할 수 있습니다.

뉴욕 시는 시, 뉴욕 주와 연방법률이 허용하는 범위에서 최대한 IDNYC 카드 발급신청자의 개인정보를 보호할 것입니다. 행정명령 41 에 따라, 시는 신청자에게 이민 신분에 대하여 질문을 하지 않을 것입니다.

신청서를 다운로드하려면 아래로 방문하십시오.

<http://www1.nyc.gov/site/idnyc/card/application-materials.page>

IDNYC 카드에 대한 보다 상세한 내용과 신청절차에 대해서는 IDNYC 웹페이지 www.nyc.gov/IDNYC 를 방문하십시오.

건강 관리

공공 건강보험은 어떻게 받을 수 있습니까?

다음은 많은 이민자들이 받을 수 있는 정부의 건강보험 프로그램들입니다.

- 모든 연령의 저소득층을 위한 메디케이드: 비응급 메디케이드인 경우 합법적 이민 신분이어야 합니다.
- 응급 의료지원을 위한 응급 메디케이드
- 어린이 건강 프로그램(Child Health Plus): 18 세 이하의 어린이
- 가족 건강 프로그램(Family Health Plus): 19~64 세의 성인
- 산전 관리 지원 프로그램(Prenatal Care Assistance Program, PCAP)
- 가족계획 혜택 프로그램(Family Planning Benefit Program, FPBP)
- 가족계획 연장 프로그램(Family Planning Extension Program, FPEP)
- HIV 양성환자 치료를 위한 에이즈 약품 지원 프로그램 (AIDS Drug Assistance Program)

누가 공공 건강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까?

뉴욕 주에서 거주하는 서류미비 이민자를 포함한 모든 이민자들은 다음과 같은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 어린이 건강프로그램(Child Health Plus)
- 산전 관리 지원 프로그램(Prenatal Care Assistance Program, PCAP)
- 가족계획 혜택 프로그램(Family Planning Benefit Program, FPBP)
- 가족계획 증진 프로그램(Family Planning Extension Program, FPEP)
- 에이즈 약품 지원 프로그램(AIDS Drug Assistance Program, ADAP)
- 응급 메디케이드(Emergency Medicaid)

가족이 소득 기준으로 공공 건강보험을 받을 수 있다면, 모든 어린이들은 이민 신분에 상관없이 공공 건강보험을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서류미비 이민자와 비이민자들(일시적인 출장, 학생, 의료, 관광 비자 소유자)은 응급 시를 제외하고 가족건강 프로그램(Family Health Plus)이나 저소득층 메디케이드의 수혜 자격이 안 됩니다.

저소득층 의료보험이나 가족건강 프로그램 수혜 자격을 얻기 위해서는 이민자들은

아래와 같은 범주 중 하나에 속해야 합니다.

- 미국으로 귀화한 시민
- 모국에서의 박해 혹은 다른 문제로 인하여 미국으로 이민온 자(피난민, 망명자, 미국-아시아 혼혈자, 쿠바/아이티 출신 입국자, 조건부 입국자, 인신매매의 피해자, 임시 보호자 신분)
- 합법적인 영주권자
- 여성폭력방지법(Violence Against Women Act, VAWA) 독립적 영주권 신청자(Self-Petitioners: 미국 시민권자의 배우자와 자녀 혹은 학대 및 남용을 당한 합법적 영주권자)
- 추방이 연기되거나 이주가 취소된 이민자
- 등록된 이민자(1972 년 1 월 1 일 이후 지속적으로 미국에서 거주한 사실을 보여줄 수 있는 사람)
- 미국에서 가석방된 사람으로서 가석방 기간이 종료되지 않은 사람
- 캐나다에서 태어난 미국인, 그리고 미국과 특수 관계를 가진 지역에서 태어난 사람
- 군 전역자, 현역 복무자, 그리고 그들의 직계가족들
- 뉴욕 주 보건부(New York State Department of Health)에 의해 Color of Law 에 의한 영구거주자(Permanently Residing Under Color of Law, PRUCOL)로 인정된 이민자

추가사항

- 이민 신분에 상관없이 모든 사람들은 응급 시에는 앰블런스를 요청할 권리와 응급실에서 치료를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 이민 신분에 상관없이, 모든 사람들이 연방기금으로 운영되는 건강관리센터와 뉴욕 시 건강병원연합에 의해 운영되는 지역사회 병원, 진단과 치료센터, 장기 치료 시설과 진료소에서 치료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공중 건강 보험에 대해 더 많은 정보를 얻으려면 인적자원관리부 저소득층 의료보험의 안내번호 (888) NYC-6116 으로 전화하십시오.

영어로 의사소통이 불편하거나 불가능한 경우에 병원에서 언어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까?

영어를 유창하게 하지 못하는 사람도 건강 관리를 받아야 하는 대부분의 의료시설에서 실질적인 언어 도움을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연방법과 주법에 의거하여 병원은 제한된 영어

구사능력(LEP)을 가진 모든 환자들이 효과적인 의사소통을 할 수 있는 전문적 통역 서비스 및 중요한 서류/설명서/정보의 번역과 같은 언어 도움을 줄 수 있는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 | |
|--|-----------------------|
| 만약 병원이 적절한 통역/번역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할 경우, 다음과 같은 기관에 공민권에 관한 불만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
| 미국 건강 인적자원부(U.S. Department of Health and Human Services), 공민권 부서(Office for Civil Rights) | (212) 264-3313 |
| 뉴욕 주 인권과(NYS Division of Human Rights) | (718) 741-8400 |
| 뉴욕 시 인권위원회(NYC Human Rights Commission) | 311 or (212) 306-7450 |

병원 사회 자문위원회(HOSPITAL COMMUNITY ADVISORY BOARDS)란 무엇입니까?

병원 사회 자문위원회(CAB)는 건강관리 시설의 의사결정 과정에 대한 견해를 뉴욕 시 건강 + 병원(H+H)의 시설에 자문하고, 시설의 목적과 의미를 병원 커뮤니티에 알립니다. CAB 회원들은 시설 개발 계획에 관하여 다양한 시각과 프로그램을 제공하며 병원 사회 단체, 지역 당국자 및 시설 관리자와 의견을 교환합니다. CAB 에 관해 더 많은 정보를 얻으려면 H+H 정부간 관계 사무국에 (212) 788-3349 로 전화하거나 웹사이트 <http://www.nyc.gov/hhc> 를 방문하십시오.

교육

누가 공립학교에 다닐 자격이 있는가?

이민 신분은 상관없이, 뉴욕 시에 거주하는 5 세에서 21 세의 모든 사람은 고등학교를 졸업할 때까지 무료로 공립학교에 다닐 권리가 있습니다. 모든 아이들은 5 세가 되는 해부터 유치원에 다닐 수 있습니다.

학생이나 학부모는 뉴욕 시 공립학교에 자신의 이민 신분을 알려야 할 의무가 없습니다.

학부모는 영어가 아닌 다른 언어로 번역된 학교에 대한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습니까?

학부모는 자신의 모국어로 번역된 중요한 교육 통지, 서신 및 양식을 제공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또한, 학부모 회의나 오리엔테이션 시 통역이 참석해야 합니다. 만약 학부모가 필요한 번역이나 통역을 받지 못했을 경우, 학부모 코디네이터와 학교, 교육부(DOE) 내 가정참여지원실, 도움을 줄 수 있는 중재자나 변호사에게 도움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교육과 관련된 사안에 있어서 자녀에게 통역을 맡기는 것은 부적절합니다.

자녀를 어떻게 공립학교에 등록시킬 수 있습니까?

학부모는 자녀들을 주거지와 가까운 학군(zone) 학교에 등록시켜야 합니다. 311 번으로 전화를 하거나 교육부 웹사이트 <http://schools.nyc.gov/ChoicesEnrollment/NewStudents> 에서 자녀들의 학군 학교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자녀들을 학군 학교에 보내기를 원하지 않는 부모님들은 '예외허가(variance)'를 신청하여 자녀들을 다른 학교로 보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외허가'를 지원하더라도 간혹 다른 학교에 보낼 수 없을 수도 있습니다. 학교를 어떻게 선택할 수 있는지, 그리고 어떻게 지원할 수 있는지

에 관하여 더 많은 정보를 얻으려면 www.insideschools.org 를 이용하시거나 (886) 427-6033 으로 전화 바랍니다.

자녀들을 뉴욕시의 Pre-K 프로그램에 등록시키려는 부모들은 자녀들의 등록을 위하여 DOE 와 접촉할 수 있습니다. Pre-K 프로그램에 등록하는 절차를 알려면 (718) 935-2009 로 전화하거나 DOE 웹사이트 <http://schools.nyc.gov/ChoicesEnrollment/NewStudents/default.htm> 를 방문하십시오.

모든 고등학교와 몇몇 중학교의 학생들은 학군 학교에 배정되지 않고 지원절차를 통해서 학교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중학교와 고등학교 입학에 대한 더 많은 정보를 얻으려면 311 번으로 전화하거나 웹사이트 <http://schools.nyc.gov/ChoicesEnrollment/NewStudents/default.htm> 를 이용하십시오.

등록하시려면 다음과 같은 서류를 구비하셔야 합니다.

- 주거지 주소 입증 서류(특정 기록만이 입증 자료로 인정됨)
- 출생 증명서나 여권 또는 세례 증명서
- 예방접종
- 어린이의 재학증명서나 최근 성적표(권장사항이며, 반드시 필요한 것은 아님)
- 부모들은 학생들이 입학을 원하는 학교, 교육부 혹은 외부기관에서 번역한 외국에서의 성적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 어린이가 특수 교육을 받고 있는 경우, 개별화 교육 프로그램(IEP)

학생이 등록을 위해 필요한 모든 서류를 가지고 있지 않을 경우에도 학교측은 학생이 학교를 다닐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그런 연후에, 학교측은 추가 서류를 입수하도록 하여야 합니다.

신규 이민자 학생들을 위한 공립학교가 있습니까?

있습니다. 이 프로그램에 관해서 더 많은 정보를 얻으시려면 전화 311 로 교육부에 전화, 혹은 웹사이트 www.insideschools.org 를 방문하거나, 또는 212-947-9779 로 어린이를 위한 변호사모임에 전화 바랍니다.

학생들은 무료 통학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까?

유치원생부터 6 학년까지의 학생들은 학년에 따라서, 그리고 집과 학교의 거리에 따라서 무료 통학버스 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모든 연령대의 학생들은 통학 거리에 따라 무료 혹은 할인된 대중교통요금으로 다닐 수 있습니다.

학생통학에 관한 더 많은 정보를 얻고 싶으면 학생교통상담실(Office of Pupil Transportation, OPT)에 전화 (718) 392-8855 로 연락하시거나 웹사이트 <http://www.optnyc.org/> 를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학교에서 조식이나 중식 무료 급식을 받을 수 있습니까?

공립학교의 많은 학생들은 무료 혹은 감액된 급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혜택을 받기 위해서 가족들은 각 학교에서 얻을 수 있는 적절한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보육

부모는 어떻게 보육지원을 받습니까?

특정한 소득 요건에 해당하는 부모들은 6 주에서 12 세의 자녀들을 위한 보육 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자녀 보육 서비스는 뉴욕 시 아동서비스국(ACS)이나 인적자원부(HRA)에 의해 운영됩니다. 보육은 단체 보육시설이나 인가받은 가정 개인보육시설에 의해 제공됩니다. 다수의 보육 프로그램들은 자녀들의 이민 신분과 관계없이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습니다. 대상 가정은 아동서비스국이나 인적자원부를 통해 자녀 보육료 지원 바우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공공지원을 받고 있거나 또는 공공지원 대상에서 제외된 지 12 개월 이내인 가정의 경우는 인적자원부를 통해 자녀 보육료 지원 바우처를 받을 수 있습니다.

보육 서비스에 관해서 자세한 정보를 원하시면 311 번으로 전화하십시오.

이중 언어 교육과 ESL

영어를 제 2 외국어로 배우는 어린이들은 학교에서 어떤 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까?

영어를 배우는 학생들은 ESL, 혹은 다른 프로그램을 통해서 이중 언어 교육을 받아야 하거나 이를 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이러한 프로그램에서 학습하는 학생들을 “영어 학습자(English Language Learners)” 즉 ELL 이라고 부릅니다. ELL 프로그램은 다음과 같습니다.

- **이중 언어 교육(Bilingual Education)**은 학생들에게 모든 과목을 가르칠 때 학생의 모국어와 영어를 함께 사용합니다. ELL 프로그램은 학생들이 모국어를 잊지 않게 하고 동시에 교과목과 영어를 배우도록 하기 위해 만들어졌습니다.
- **English as a Second Language(ESL)**는 영어와 다른 과목을 어린이에게 영어만을 사용하여 가르칩니다.
- **Dual Language/Two Way Model** 강의는 학급 내 모든 학생들에게 영어 및 다른 언어를 가르치기 위하여 영어 원어민과 다른 언어의 원어민을 같은 반에 배정합니다.
- **Accelerated Academic English Language Model** 는 학습시 영어가 강조되고 ESL 의 교수법이 사용되는 프로그램입니다.

ESL 프로그램은 모든 학교가 제공하여야 하지만 이중 언어 교육 프로그램은 모든 학교가 제공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만약 학교에 이중 언어 교육 수업과 ESL 수업이 있다면 부모들은 자녀들을 위해 두 수업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학교는 학생들의 이중 언어 교육 또는 ESL 수강 여부를 어떻게 결정합니까?

자녀를 학교에 등록하려는 모든 부모 또는 보호자는 자녀와 가족들이 집에서 어떠한 언어를 사용하는지 묻는 가정언어현황조사(Home Language Identification Survey, HLIS)를 작성하셔야 합니다. 조사의 답변에 따라서, 자녀들은 이중 언어 교육 프로그램을 들어야 할지 또는 ESL 을 들어야 할지를 결정하는 언어평가종합 시험(Language Assessment Battery(LAB) test)을 볼 수도 있습니다. LAB 시험 성적 결과가 41% 이하인 어린이는 영어학습자(English Language Learner, ELL)로 분류되고 이중 언어 교육 혹은 ESL 을 수강해야 합니다.

학교는 최근 ELL 프로그램에 대한 오리엔테이션을 통해 신입 ELL 학생의 부모들에게 학생들이 수강할 수 있는 다양한 ELL 프로그램에 대해 설명해야 합니다. 오리엔테이션에서 부모님들은 ELL 서비스에 대해 질문을 할 수 있고 ELL 프로그램에 대한 자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필요에 따라 통역을 통해서).

부모가 자녀들이 이중 언어 교육 프로그램 혹은 ESL 교육을 받는 것을 원하지 않을 때는 어떻게 합니까?

부모님들은 자녀들이 LAB 시험에서 보다 좋은 점수를 받도록 재시험 요구를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모든 재시험 요구가 받아들여지는 것은 아닙니다.

ESL 프로그램 혹은 여타 가정에 대한 정보를 원하면 DOE 영어학습자와 학생지원부(Department of English Language Learners and Student Support)에 (212) 374-6072 로 전화하거나 웹사이트 <http://schools.nyc.gov/Academics/ELL/default.htm> 를 방문하십시오.

특수교육이란 무엇입니까?

3 세부터 21 세까지 정상적 학업이 어려운 장애를 가진 학생은 전문화된 지도, 즉 ‘특수 교육’을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이러한 장애는 난독증과 같은 사소한 장애부터 정신적 장애와 신체적 장애를 포함하여 보다 심각한 장애까지 해당됩니다.

특수교육 서비스에는 상담, 자료실, 보조교사 서비스, 물리치료, 언어치료, 보조공학, 특별교과과정과 여타 “관련서비스”가 포함됩니다. 특수교육 학생은 비장애 학생들과 함께 일반적인 교실에서 교육을 받거나 또는 특수교육 학생들끼리 한 교실에서 교육을 받습니다.

특수교육을 받으려면 어떻게 합니까?

학부모나 학교는 학생의 특수교육 위탁과 그를 위한 평가를 서면으로 요청할 수 있습니다. 학생이 영어를 잘 못한다는 이유만으로는 특수교육을 받을 수 없습니다. 학생은 안내를 받은 부모의 동의서가 있어야 특수교육을 위한 평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ELL 학생들은 이중 언어의 특수교육 평가를 받아야 합니다.

학부모들은 자녀의 특수교육에 대한 회의 또는 공청회에서 특수교육에 대한 자료의 번역본과 통역사를 제공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학생이 특수교육 서비스를 받을 조건을 갖췄다고 확인된 경우, 그 학생이 받게 될 서비스와 학생의 교육목표 및 수준이 기재된 중요 서류인 개별화 교육 프로그램(IEP)을 받게 될 것입니다.

만약 자녀가 특수교육을 받는 것을 학부모가 동의하지 않거나 적합한 서비스를 받지 않고 있다고 생각하는 경우에는 그 문제들에 이의를 제기하는 공청회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때 학부모는 특수교육에 관한 공정한 공청회와 특수교육에 관한 회의를 돕는 변호사를 선임할 수 있습니다.

특수교육 서비스에 대한 보다 상세한 내용을 원하시면, 교육부의 특수교육 핫라인(Department of Education Special Education Hotline) 에 (718) 935-2007 로 전화하거나, DOE 특수교육 웹사이트 <http://schools.nyc.gov/Academics/SpecialEducation/default.htm> 를 방문하십시오.

학부모 참여

학부모는 자녀의 교육에 어떻게 참여할 수 있습니까?

학부모들은 여러 방법으로 자녀들의 학교와 학습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학부모들은 학생의 교사들이나 학교 행정관리자들과 정기적으로 만나 의견을 나눌 수 있습니다. 또한 학부모들은 부모들의 관심사가 전달되도록 돕고 부모의 참여를 지원하는 업무를 담당하는 학부모 코디네이터와 상의할 수 있습니다.

부모들은 아래와 같은 관련 기관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 학부모 협의회(Parent Association, PA) / 학부모 교사 협의회(Parent Teacher Association, PTA): 예산과 교과과정과 같은 학교 운영에 관한 모든 의사결정을 학교와 상의할 수 있는 단체. 학부모 협의회 / 학부모 교사 협의회는 학교의 운영과 성취도에 대한 정보를 얻을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 학교 집행 위원회(School Leadership Team): 학부모, 학교 지도자와 교사로 구성되는 그룹이며, 학교의 교육방침과 학교의 종합 교육계획(Comprehensive Educational Plan, CEP)을 수립합니다.
- 지역 교육 위원회(Community Education Councils, CEC): 32 개의 지역교육위원회가 있으며, 가정과 학생들의 수요와 관심을 대변하고, 뉴욕 시의 32 개 각 지역학교 구역에서 교육정책을 수립하는 것을 지원합니다.
- 시 단위 교육위원회(Citywide Education Councils, CEC): 4 개의 시 단위 교육위원회가 있으며, 가정과 학생들의 수요와 관심을 대변하고, ELL, 특수 교육, 75 구역 및 고등학교 분야의 교육정책을 수립하는 것을 지원합니다.
 - 지역 및 시 단위 교육위원회는 학부모와 관심 있는 지역사회의 선출 혹은 임명되는 회원들로 구성됩니다.
 - CEC 는 매월 공식회의를 개최합니다. 그들의 임무는 학군 경계를 결정하고, DOE 의 자금계획에 대한 청문회를 개최하며, 지역 교육감을 평가하고, 여타 주요 정책에 대한 조언을 하는 것입니다.

CEC 에 대한 보다 상세한 내용을 원하면 교육부의 가족 및 지역사회 참여과에 (212) 374-4118 로 전화하거나 <http://schools.nyc.gov/Offices/CEC> 를 방문하십시오.

- 지역 위원회: 지역 위원회는 무급 위원 50 인 이하로 구성되는 지역 대표 조직입니다. 위원들의 반수는 보로 대표에 의해 임명되고, 나머지 반수는 시의원들에 의해 지명됩니다. 위원회는 한 달에 한 번 공식적 모임을 가집니다. 일반 시민으로서 각 회의마다 일정 시간 의사 개진을 할 수 있습니다. 위원회는 교육을 포함하여 지역사회에 영향을 미치는 광범위한 이슈들에 대해 건의할 수 있습니다. 지역 위원회에 참여하는 것에 대한 더 많은 정보를 원하시면 이 안내서의 '투표와 참여' 부분을 참고하십시오.
- 교육 정책 자문단(Panel for Educational Policy, PEP): 교육 정책 자문단은 표결권이 있는 13 명과 표결권 없는 학생자문위원회 회원 2 명으로 구성된 독립적인 위원회입니다. 임명되는 13 명 가운데 8 명은 시장이 임명하며, 5 명은 각 보로장이 1 명씩 임명합니다.
 - PEP 는 매월 일반시민들의 의사 개진 시간이 보장된 공청회를 개최합니다. 학부모는 누구나 교육부의 정책을 듣고 교육 정책 자문단과 교육감에게 의견을 전달하기 위해 월회의에 참석할 수 있습니다.
 - PEP 멤버들은 학교의 병설, 학교 폐쇄, 학년 확대와 축소 등과 관련된 교육부의 제안에 대한 투표를 실시합니다. 또한 PEP 는 교육성과와 학생들의 성취도에 대한 표준, 정책, 목표와 규칙 등을 검토하며, 교육부의 계약, 연간 운영예산과 자본 계획에 대한 검토를 합니다.

학부모는 중요한 교육 통지와 서한, 양식을 모국어로 번역받을 권리가 있으며, 학부모 회의와 오리엔테이션 시 통역이 가능해야 한다는 것을 주의하십시오. 학부모가 번역이나 통역을 받지 못한다면, 학부모 코디네이터와 학교, 교육부 내 가정 및 지역사회 참여담당실 혹은 변호사와 접촉하여 도움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학생 징계

학생의 일탈행위는 어떻게 징계합니까?

학교는 시의 징계 수칙을 따라야 하며, 합당한 징계를 결정하기 위해 학생의 나이, 성숙도, 이전 징계 기록과 무엇보다도 사건의 정황 등의 요소들을 고려해야 합니다. 학부모는 자녀의 징계가 합당하고 합법적인지 확인하기 위해 징계수칙의 사본과 학생 권리 조항들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징계 시 학생이 가질 수 있는 권리는 무엇입니까?

학생들은 본인 또는 학부모가 징계에 동의할 수 없는 경우, 적정한 과정을 거쳐 징계 처분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정학에는 2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교장의 정학 처분과 교육감의 정학 처분입니다. 교장의 정학 처분이 교육감의 정학 처분보다 징계수준이 낮습니다. 아래는 학교가 정학 처분을 할 때 지켜야 하는 중요한 규칙입니다.

- 학생들은 정학의 자세한 사유가 서술된 서면통지를 정당히 전달 받을 수 있어야 합니다.
- 교장의 정학 처분 기간은 5 일을 초과할 수 없지만 교육감의 정학 처분은 그 이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 학생들은 정학 처분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권리가 있으며 변호사를 대동할 수 있습니다.
- 학부모와 학생들은 모든 통지와 회의, 공청회에서 번역과 통역을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 정학 기간 동안 학생들에게 학습과정에 있어 처벌을 주어서는 안 됩니다. 학생들은 재시험이 허용되지 않는 시나 주에서 주관하는 시험에 응시할 수 있어야 하며, 성적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모든 학교 시험은 재시험이 허가되어야 합니다.
- 학생들에게 정학 기간 동안 수업활동과 숙제 등의 대체 학습지도가 제공되어야 합니다.

정학의 절차에 대한 더 많은 정보를 원하면, 교육부 홈페이지(<http://schools.nyc.gov/RulesPolicies/ChancellorsRegulations>)에 기재된 교육감규정 A-443 을 참고하십시오.

학생의 정학과 관련하여 도움을 청하고 싶으시면 아래 번호로 전화하십시오.

| | |
|---|----------------|
| 자녀를 위한 변호사 모임(Advocates for Children) | (212) 947-9779 |
| 뉴욕 법률지원그룹(NY Legal Assistance Group) | (212) 613-5000 |
| 뉴욕 시 법률 서비스(Legal Services for New York City) | (212) 431-7200 |

대학 진학

모든 이민 신분의 사람이 대학에 진학할 수 있습니까?

이민 신분과 상관없이 누구나 대학에 지원할 수 있습니다.

뉴욕 주 공립 대학과 종합대학교는 해외 비자를 가진 타국적 학생이 아닌 한, 학생의 이민 신분을 정부에 보고할 의무가 없습니다.

그리고 뉴욕시립대(CUNY)와 뉴욕주립대(SUNY)가 가지고 있는 학생들의 이민 신분을 포함한 모든 개인 정보는 ‘연방 교육권리 및 개인정보 보호행동(FERPA)’에 따라 기밀로 보호됩니다. 이 연방법은 ‘특정 학생의 기록에 대한 합법적인 교육 이해관계’를 가진 것으로 결정된 대학 교수진을 제외하고 어느 누구에게도 학생 정보 공개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학생의 이민자 신분 정보의 경우는 학교의 회계담당 직원만이 그 정보에 대해 ‘합법적인’ 이해관계를 가지는 것으로 간주됩니다. 다른 사람들이 이러한 기록들에 접근 권한을 획득하기 위해서는 학생의 서면허가를 받아야만 하고, 정부 관리는 그 정보가 수사 중인 사건을 위해 필요하다고 진술된 법원의 영장을 제시해야 합니다.

이민자 학생도 주내 거주민 학비로 낼 수 있습니까?

뉴욕의 공립 대학이나 종합대학교에서 서류미비 이민 신분의 학생이 상대적으로 낮은 금액의 주내 거주민 학비의 적용을 받으려면 다음과 같습니다.

- 최소 2 년간 뉴욕 주 고등학교를 재학한 후 졸업하고, 고등학교 졸업장 취득 후 5 년 이내에 뉴욕주립대나 뉴욕시립대에 지원해야 합니다.

또는

- 뉴욕 주가 인증한 중등교육 이수증명 시험(Test Assessing Secondary Completion, TASC) 혹은 2014 년 1 월 1 일 이전의 검정고시(General Equivalency Diploma, GED) 프로그램에 참가하여, 뉴욕 주에서 발급한 TASC/GED 증서를 받은 후 5 년 이내에 뉴욕주립대, 뉴욕시립대, 주에서 운영하는 혹은 커뮤니티 칼리지에 지원해야 합니다.

그리고

- 학생이 이민자 신분에 대해 합법화하기 위한 신청서를 제출했거나 신청서를 제출할 자격이 있을 때, 가능한 한 신속하게 신청서를 제출하겠다고 진술한 공증받은 서류를 뉴욕시립대 또는 뉴욕주립대에 제출해야 합니다.

그리고

- 학생이 주내 거주자임을 증명해야 합니다. 학생들은 주내 거주민 학비를 적용받기 위해 어떻게 거주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지에 대해 뉴욕시립대 또는 뉴욕주립대 내의 관련 부서에서 직접 상담을 받아야 합니다. 학생들은 상대적으로 높은 금액의 주외 거주자 적용 학비를 지불하지 않기 위해 거주 증명이 신속하게 검토되는 것을 확인해야 합니다.

이민자 학생들이 장학금이나 학자금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학생들의 대학 진학을 돕기 위해 개인 및 가정에 재정 지원을 제공하는 연방/주 프로그램은 상당히 많습니다. 연방 정부는 미국 교육부를 통해 학부 과정과 대학원 과정 모두에서 학생 및 학생의 부모를 위한 보조금 & 대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귀하 또는 귀하의 자녀가 해당 프로그램을 이용할 수 있는지 확인하려면 아래 제시되어 있는 교육부 웹사이트를 방문하십시오.

<https://studentloans.gov/myDirectLoan/index.action>

뉴욕 주 또한 학생들이 뉴욕에서 대학에 진학하는 것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을 운영 중입니다. 특히 뉴욕 주 학비보조 프로그램(New York State Tuition Assistance Program, TAP)은 유자격자에게 보조금을 제공해서 학비 지불을 돕습니다. 일부 학생은 TAP 외에도 최근 제정된 엑셀시오르 장학금(Excelsior Scholarship) 프로그램을 이용할 수 있으며, 이 프로그램을 통해 뉴욕 주 내의 특정 대학과 대학교에 무료로 진학할 수도 있습니다. 상기 내용 및 뉴욕 주의 다른 교육 프로그램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https://www.hesc.ny.gov/>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서류미비 이민 신분의 학생들은 대부분의 주 또는 연방 재정보조 프로그램을 적용받을 자격이 없지만, 사설 장학금이나 대출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서류미비 이민 신분의 학생 경우

뉴욕 주 학비보조 프로그램(TAP), 뉴욕 주 시간제 교육 지원(APTS), 연방 무상 학자금(Pell Grants), 연방 추가 교육 기회 보조금 (FSEOG), 퍼킨스 융자(Perkins Loans), 스탠포드 융자(Stafford Loans), 학부생을 위한 학부모 대출(PLUS), 연방 근로학생 지원(Federal Work Study)의 수혜 대상이 되지 못합니다.

뉴욕시립대와 뉴욕주립대는 이민자 신분과 상관없이 교내의 모든 학생들이 받을 수 있는 장학금을 상당수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장학금과 학자금 융자에는 다음과 같은 것이 있습니다.

- **교육 기회 프로그램(Educational Opportunity Program, EOP):** 경제적, 교육적으로 불리한 여건을 가진 뉴욕주립대 학생이 받을 수 있는 장학금
- **교육과 도약 그리고 지식 추구(Search for Education, Elevation, and Knowledge, SEEK):** EOP 와 유사한 4 년제 뉴욕시립대의 장학금
- **대학 탐구(College Discovery, CD):** EOP 와 유사한 2 년제 뉴욕시립대의 장학금

위와 같은 장학금을 받은 학생들은 대개 수업료와 교재를 위한 금전적 지원을 받게 됩니다. 또한 개인교습 그리고 경력과 개인상담 서비스를 받게 됩니다.

이러한 프로그램에 지원하려면, 학생들은 뉴욕시립대나 뉴욕주립대의 표준 입학신청서의 EOP, SEEK 또는 CD 난에 체크를 해야 합니다. 장학금을 신청하려면 자신의 경제적 수혜자격을 입증하는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에 대해서 대학 재정보조 상담원으로부터 도움을 얻을 수 있습니다.

피터 벨론 장학금(Peter F. Vallone Academic Scholarship Program)

뉴욕시립대의 장학금으로 뉴욕 시 고등학교를 정식 학생으로 졸업하고 요구하는 학업 성적 평균 점수와 과목이수 조건을 만족하는 학생에게 수여됩니다. 뉴욕시립대 지원자들은 누구나 자동적으로 피터벨론 장학금의 고려대상이 됩니다. 따라서 학생들은 지원서를 작성하지 않아도 됩니다.

아너스 칼리지(Honors College)

아너스 칼리지 프로그램은 Baruch College, Brooklyn College, City College, Hunter College, John Jay College of Criminal Justice, Lehman College, Queens College 와 College of Staten Island 등의 뉴욕시립대 학생들에게 제공됩니다. 2007 년에 아너스 칼리지 프로그램은 선정된 신청자들에게 수업료 전액과 제반 비용 및 지출비 \$7,500 와 기타 보조금이 지급되었습니다.

학생들은 고등학교 최고 학년도 9 월에 아너스 칼리지를 지원할 수 있습니다. 아너스 칼리지의 지원서는 보통의 뉴욕시립대 프로그램의 지원서로도 취급됩니다. 입학은 학업 성취도, 에세이, 추천서 그리고 경우에 따라서 인터뷰 결과로 결정됩니다.

개인 재정지원 정보

| | |
|--|---|
| 아래의 웹사이트는 서류미비 이민 신분 학생들도 받을 수 있는 사설 장학금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 |
| 멕시코인 미국인의 법적 보호 및 교육 지원(Mexican American Legal Defense and Education Fund) | http://www.maldef.org/leadership/scholarships/index.html |
| 비주류 학생 지원(Students Opening Doors for Others): | http://www.neighborhoodlink.com/Students_Opening_Doors_For_Others_SODO/pages/456022 |

학교 특정 장학금

사립 종합대학교나 대학에 지원하는 학생들은 해당 학교에서 사설 재정 보조 프로그램의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재정지원에 대해 자세한 정보를 얻으려면 입학하고자 하는 대학 또는 종합대학교의 재정지원부서를 방문하십시오. 많은 교내 우수학생 장학금의 경우 학생의 미국 시민권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학자금 대출

다수의 학교들은 연방 혹은 주 학자금대출을 대체하는 사설 학자금 대출을 제공합니다. 대부분의 사설 학자금 대출에는 미국 시민권이나 영주권이 필요하지만 장학금 수혜 적격성은 대출 제도의 유형과 대출 기관에 따라 다릅니다. 특정 은행에 거래 이력이 있는 학생은 그 은행에 사설 학자금 대출을 신청하는 것을 고려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많은 종합대학교와 대학에서 학장은 개별 학생에게 대출을 승인할 수 있습니다. 대출금액과 이자율은 대개 학장의 재량과 개별 학교 정책에 의거해 결정됩니다. 학생은 이러한 대출이 가능한지 의논하기 위해 학교 학장과 면담을 할 수도 있습니다.

가정폭력과 학대 및 인신매매

가정폭력이란 무엇입니까?

가정폭력은 남편과 아내간 혹은 가족이나 여타 가까운 관계를 포함하는 가정 안에서 발생합니다. 가정폭력은 신체적, 정서적, 경제적, 성(性)적 학대 등의 범죄입니다. 많은 여성들이 남편 혹은 남자친구에게 폭력을 당합니다. 가정폭력은 동성 사이에서도 일어날 수 있으며 남성도 피해자가 될 수 있습니다.

노인학대란 무엇입니까?

노인학대는 가족구성원 또는 간병인이 노인 혹은 몸이 불편한 사람을 학대하는 것을 말합니다. 노인학대에는 신체적, 성(性)적, 정신적, 경제적 학대 또는 방치가 있습니다. 또한 노인에게 음식과 치료를 제공하지 않는 것도 노인학대입니다.

아동학대란 무엇입니까?

아동학대는 부모나 보호자, 형제 자매, 가족구성원 또는 다른 사람들에 의해서 어린이에게 신체적, 정서적으로 상처를 입히는 것을 말합니다. 어린이에게 상처를 입히는 것은 불법이며 자녀가 부모로부터 격리될 수 있습니다.

인신매매란 무엇입니까?

매년 수천 명의 여성, 남성 그리고 어린이들이 매춘, 농업, 가정부, 건설현장, 노동 착취 장소 등과 같은 성매매 혹은 강제노동을 목적으로 뉴욕으로 혹은 뉴욕을 통해 이동됩니다. 뉴욕에는 인신매매의 피해자를 보호하고 돕는 강력한 법이 있습니다. 인신매매 피해자를 어떻게 도울 수 있는지에 대한 정보가 필요하면 본 안내서의 근로자 권리 부문의 마지막 쪽을 참고하십시오.

| 가정 폭력 & 학대 서비스에 관한 추가 정보 | |
|--|---|
| 노인 학대를 포함하여 가정폭력을 신고하려면: Safe Horizon Domestic Violence Hotline | (800) 621-HOPE (800-621-4673) 주 7 일, 매일 24 시간 무휴 |
| 뉴욕 시에서의 아동학대 혐의를 신고하려면: New York State Child Abuse Hotline | (800) 342-3720 |
| 가정폭력을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는 시정부 서비스를 알려면: | 전화 311 혹은 www.nyc.gov/domesticviolence |

증오 범죄

증오 범죄란 피해자의 인종, 피부색, 출신국, 혈통, 성별, 종교, 종교적 관습, 나이, 장애 여부 또는 성적 성향이나 인종, 피부색, 출신국, 혈통, 성별, 종교, 종교적 관습, 나이, 장애 여부 또는 성적 성향에 대한 생각이나 인식을 토대로 자행되는 범죄를 뜻합니다. 최근 몇 달간 뉴욕 시에서는 보다 많은 수의 증오 범죄(이민자를 대상으로 한 범죄 포함)가 발생했습니다.

증오 범죄 신고 방법

증오 범죄를 당했거나 목격했을 경우, 이를 즉시 신고해야 합니다. 모든 통화는 기밀로 처리됩니다.

긴급한 상황에서는 911 에 전화해야 합니다.

증오 범죄 및 편견 관련 범죄는 경찰 지구대에 신고해야 합니다. 해당 지구대에 직접 연락하거나 311 로 전화하십시오. 311 에 전화해서 증오 범죄를 신고한다고 말하면 상담원이 귀하가 계시는 지역의 지구대 전화번호를 알려드리고 해당 지구대로 전화를 연결해드릴 것입니다.

또한 NYPD 에는 뉴욕 시에서 이루어지는 증오범죄법 집행 감독을 지원하는 증오 범죄 전담반(Hate Crimes Task Force)이 있습니다. 이미 지구대로 증오 범죄를 신고했으며 신고가 어떻게 처리되고 있는지에 관한 질문이 생길 경우, NYPD 증오 범죄 전담반(646-610-5267)에 연락해서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와 더불어, 맨해튼 지방검찰청에도 증오 범죄 핫라인(Hate Crime Hotline)이 있습니다. 누구나 여기에 전화해서 증오 범죄를 신고할 수 있으며, 아직 경찰에 신고하지 않은 경우에도 신고가 가능합니다. 전화번호는 (212) 335-3100 입니다. 해당 검찰청은 피해자를 카운셀링 및 지원 프로그램이나 서비스 제공자에게 보내주기도 합니다.

중요 연락처

NYPD 증오 범죄 전담반

One Police Plaza
New York, NY 10038
646-610-5267

뉴욕 시 증오 범죄 핫라인

311

뉴욕 주 인권국 증오 범죄 핫라인

(888) 392-3644(월요일~금요일 오전 9시~오후 5시)

뉴욕 카운티 지방검찰청 증오 범죄과

One Hogan Place

New York, NY 10013

212-335-3100 (대표 전화번호)

212-335-9500 (TTY)

근로자 권리

이민 근로자가 가질 수 있는 권리는 무엇입니까?

최저임금

이민신분에 상관없이 모든 근로자는 실제로 일한 만큼의 임금을 지불받아야 하며 최저임금을 지급받아야 합니다. 2017 년 1 월 현재 뉴욕 주의 최저임금은 시간당 최소 \$9.70 이며, 뉴욕 시의 경우 더 높습니다. 한편, 뉴욕 시 최저 임금은 대기업 근로자들의 경우 2018 년 말까지, 10 인 이하 기업 근로자들의 경우 2019 년 말까지 시간당 \$15 로 상향될 예정입니다.

팁을 받는 근로자의 경우 종사하는 업종에 따라 최저임금보다 낮게 받을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음식 배달원, 음식점 종업원, 세탁 배달원 등은 최저임금보다 낮게 받을 수 있는 근로자의 예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근로자들이 받는 팁에 관한 추가적인 요구조건이 있습니다. 팁을 받는 근로자는 팁이 어떻게 다루어지는가에 따라 고용주에 의하여 착취당할 수 있습니다. 팁을 획득할 수 있는 근로자의 권리에 대하여 보다 상세한 안내는 전화 (888)469-7365 로 뉴욕 노동부에서 구할 수 있습니다.

초과근무 수당

일부 상황에서, 만약 근로자가 일주일에 40 시간 이상 근무를 할 경우, 고용주는 근로자의 초과된 시간에 대한 초과수당으로 시급의 1.5 배를 지급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근로자가 보통 시간당 \$8 를 번다고 하면, 40 시간 이상 일을 한 것에 대해서는 시간당 \$12 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입주 가사도우미는 한 주에 44 시간 이상의 경우 초과수당을 적용 받을 수 있습니다.

- 직장을 그만두는 근로자는 자신이 근무하였던 모든 시간에 대한 임금을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 근로자는 정해 놓은 날에 임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이는 매주 받거나 2 주마다 받는 것을 뜻합니다.

최저임금이나 초과근무수당에 대한 더 많은 정보를 원하거나 이와 같은 법적권리에 대해 그룹이나 기관단위의 교육을 요청하려면 아래로 연락하십시오.

| | |
|--|----------------|
| 뉴욕 주 노동부(New York State Department of Labor) | (212) 775-3880 |
| 이주근로자 권익보호실(Bureau of Immigrant Workers' Rights) | (212) 775-3665 |

| | |
|---|--------------------------------------|
| 뉴욕 주 검찰총장실 노동과(New York State Attorney General's Office Labor Division) | (212) 416-8700 |
| 법률자문협회 노동법 프로젝트(Legal Aid Society Employment Law Project) | (888) 218-6974 |
| MFY 법률서비스(MFY Legal Services) | (212) 417-3838 월, 화요일 오후 2 시~5 시. |

미지급 임금에 대한 청구를 하시거나 더 많은 정보를 얻고 싶으시면 아래로 연락하십시오.

| | |
|---|---|
| 미국 노동부 임금 및 근로시간과(U.S. Department of Labor, Wage & Hour Division) | 26 Federal Plaza, Room 3700 New York, NY 10278 (212) 264-8185 또는 (866) 487-9243 |
| 뉴욕 주 노동부 근로기준과(New York State Department of Labor, Division of Labor Standards) | 75 Varick Street, 7th Fl., New York, NY 10013 (212) 775-3880 |

통상임금 및 혜택

공공 업무 프로젝트를 담당하거나 정부기관(연방, 주, 시)과의 계약에 의하여 특정 서비스와 관련한 작업을 하는 도급업체 혹은 하도급업체의 근로자들은 법률이 정한 통상임금(Prevailing Wage)과 수당을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공공 업무 프로젝트는 건설, 교체, 학교와 도로 및 공원과 같은 공공의 목적에 사용되는 재산의 유지관리 등의 업무입니다. **공공 업무 프로젝트**에 고용되는 교역의 예로는 전기기술자, 설비공 및 노동자가 있습니다. **정부 서비스 계약 작업**에 고용되는 교역의 예로는 건물 청소부, 보안 요원, 자택 치료 안내원이 있습니다.

통상임금과 수당 아래로 지불하는 도급업체 혹은 하도급업체는 법률을 위반하는 것입니다. 통상임금은 대체로 최저임금보다 높습니다. 만약 근로자가 저임금을 받고 있다고 생각하면 아래 수록된 해당 정부기관에 서면으로 불만을 제기하여야 합니다. 만약 근로자가 저임금을 받았다고 결정이 내려지면 고용주로부터 미지급 받은 금액을 받을 법률적 권리를 가지게 됩니다.

뉴욕 시 감사원장실은 통상임금을 시행하며, 시 공공 업무 프로젝트나 서비스 계약에서 저임금 근로자들이 지급받아야 할 금액을 회수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무청구 통상임금 지급

지난 10년간, 뉴욕 시 감사원장실은 수많은 근로자들의 통상임금 미지불액 수백만 달러를 모아왔으나, 해당 근로자들은 아직 지급을 청구하지 않았습니다. 이들은 어쩌면 자신들이 지급 대상자(이민 신분엔 관계없음)라는 사실도 모르고 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본인이 지급 대상자라고 생각하는 근로자는 (212) 669-4443 에 전화하거나, laborlaw@comptroller.nyc.gov 로 이메일을 보내거나, <http://comptroller.nyc.gov/prevaling-wage/unclaimed-prevailing-wage/>를 방문할 수 있습니다.

| | |
|---|---|
| <p>보다 자세한 정보를 원하거나 통상임금 지급 위반에 대한 불만제기는 아래로 전화하십시오.</p> | |
| <p>뉴욕 시 감사원장실(Office of the New York City Comptroller)</p> | <p>Office of the New York City Comptroller Bureau of Labor Law One Centre Street, Room 1122 New York, New York 10007 (212) 669-4443</p> |
| <p>뉴욕 주 노동부 공공업무과(New York State Department of Labor Bureau of Public Works)</p> | <p>New York State Department of Labor Bureau of Public Works Adam Clayton Powell Jr. SOB 163 West 125th Street, Room 1307 New York, New York 10027 (212) 932-2419</p> |
| <p>미연방 노동부, 임금 및 근로시간과(U.S. Department of Labor, Wage and Hour Division)</p> | <p>United States Department of Labor Wage & Hour Division 26 Federal Plaza, Room 3700 New York, New York 10278 (212) 264-8185</p> |

고용주의 의무는 무엇입니까?

- 법에 의해 고용주는 피고용인의 근로시간, 피고용인에게 지급한 급여, 급여 공제에 대한 기록을 남겨야 합니다.
- 고용주는 연방세, 주세, 노동조합비, 건강 및 연금비, 자녀 양육비 등을 피고용인의 급여에서 공제할 수 있습니다.
- 고용주는 피고용인으로 인한 재물파손, 실적저조, 지각에 대한 처벌, 유니폼의 구입 및 세탁비 명목으로 급여에서 공제할 수 없습니다.
- 고용주는 피고용인이 고용주의 이익을 위하여 이동을 한 것이라면 교통비를 공제할 수 없습니다.

- 고용주는 매 급여 지급시 피고용인에게 반드시 급여명세서를 교부하여야 합니다. 명세서에는 모든 공제내역과 수령 급여액, 근무시간, 시간당 급여, 총급여액(공제전), 실수령급여액(공제후) 등이 기재되어야 합니다.
- 고용주는 근로자가 받은 팁의 일부분이라도 받거나 요구해서는 안 됩니다

근로자는 고용주의 불법행위로부터 어떻게 자신을 보호할 수 있습니까?

근로자는 고용주의 연락처 정보와 급여명세서, 근무시간, 급여액에 대한 충분한 기록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이러한 기록을 보존하면 조사나 소송 제기 시 증거로 도움이 됩니다.

근로자는 동료들과 기록을 보존하고 자신의 권리를 보호해야 한다는 정보를 교환하고 그럴 수 있도록 장려해야 합니다. 권리에 대해 아는 근로자가 많아질수록 고용주가 법을 준수할 가능성도 높아집니다.

근로자는 어떻게 해야 차별을 받지 않을까요?

근로자들은 고용 중에 그리고 구직 시에 차별 받지 않을 권리가 있습니다. 법은 근로자에 대한 민족, 인종, 성별(임신 포함), 연령, 장애, 국적(출생지, 가문, 문화 또는 언어 포함), 시민권 신분, 종교, 성적 취향, 기타 범주의 것들에 기인한 차별을 금하고 있습니다. 차별을 당한 근로자들은 고용주를 고소할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근로자의 소송에 대하여 고용주는 보복을 하거나 불리한 처벌을 할 수 없습니다.

- 고용주는 근로자가 고용된 시점부터 수일 내에 적절한 근로 관련 서류를 가질 수 있도록 확인해야 하며 특정 이민비자에 대해서만 요구할 수 있습니다. 고용주는 단지 근로자나 지원자의 국적을 이유로 또는 “이질적”인 용모를 이유로 근로자나 지원자의 서류를 확인하면 안 됩니다.
- 고용주는 피고용인 또는 예비 피고용인의 종교적 신앙을 합리적으로 수용(예를 들어, 때때로 종교적 휴일에 일하지 않는 것을 허락)해야 합니다.
- 고용주는 구직자들의 장애 여부에 대해 질문할 수 없지만 구직자들이 필수적인 업무를 수행 가능한지 여부에 대해서는 질문할 수 있습니다. 고용주는 사업상의 과도한 부담이 아닌 한 장애를 가진 근로자들에게 합리적인 편의를 제공하여야 합니다.

만약 근로자들이 고용 중에 또는 구직 시에 차별을 받았다고 느끼는 경우 아래의 기관을 통해 항의를 할 수 있습니다.

| | |
|---|---|
| 미국 균등고용기회 위원회(U.S. Equal Employment Opportunity Commission, EEOC) | 33 Whitehall Street New York, NY 10004 (800) 669-4000 |
| 뉴욕 주 인권위원회-본부(New York State Division of Human Rights –Headquarters) | One Fordham Plaza, 4 th Floor Bronx, NY 10458 (718) 741-8400 |
| 뉴욕 시 인권위원회(NYC Commission on Human Rights) | 100 Gold Street, Suite 4600 New York, NY 10038 (212) 306-7450 or (212) 306-5070 |

직장에서의 이민자에 대한 차별에 대처하기 위한 보다 상세한 정보는 (212)627-2227 로 뉴욕 이민자연합(New York Immigration Coalition)에서 얻을 수 있습니다.

업무상 안전

근로자들은 건강에 위험하거나 안전사고가 일어나지 않는 일터를 요구할 권리가 있습니다. 근로자들은 독성 화학물질이나 소음과 같은 위험 노출과 관련한 고용주의 정보를 요구할 권리가 있습니다. 또한 근로자들은 안전 관련 문제에 관하여 고용주가 가지고 있는 모든 의료기록을 요구할 권리가 있습니다. 근로자들은 위험한 업무 환경에 대해 고용주에게 불만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근로자들은 미국 산업안전보건국(OSHA)을 통해 불만을 제기할 권리가 있으며 작업장에 대한 조사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근로자들은 산업 안전 보건국 조사관의 질문에 답할 권리가 있으며 위험요소를 지적할 권리가 있습니다. 이는 사고나 질병을 설명하는 것뿐만 아니라, 고용주가 단지 조사를 받기 위해 일시적으로 위험요소들을 제거한 경우 이를 설명하는 것까지 포함됩니다. 산업 안전 보건국을 통해 불만을 제기한 근로자는 원할 경우 익명으로 처리될 수 있으며, 근로자의 이름이 고용주에게 알려지지 않을 것입니다.

조사가 끝난 후 근로자들은 결과를 통보 받을 자격이 있으며 조사관을 개별적으로 만나 그 결과를 논의할 수 있습니다.

업무상 건강 및 안전 문제에 대해 불만을 제기하여 차별을 받았다고 생각하는 근로자들은 아래 에 있는 기관에 30 일 이내에 차별 행위를 고발할 수 있습니다.

| | |
|---|--|
| 미국 노동부 OSHA 지역사무소(U.S. Department of Labor OSHA Regional Office) | 201 Varick Street, Room 670 New York, NY 10014 (212) 337-2378 또는 (800) 321-6742 (emergency hotline) |
| OSHA 뉴욕시 사무소(OSHA New York City Office) | 201 Varick Street, Room 908 New York, NY 10014 (212) 620-3200 |
| 뉴욕시 인권위원회(NYC Commission on Human Rights) | 100 Gold Street, Suite 4600 New York, NY 10038 (212) 306-7450 또는 (212) 306-5070 |
| 뉴욕직장안전보건협의회(New York Committee for Occupational Safety and Health, NYCOSH) | (212) 227-6440 www.nycosh.org |

업무상 건강 및 안전에 대한 추가 정보는 뉴욕 직장안전보건협의회(New York Committee for Occupational Safety and Health, NYCOSH: (212)227-6440 와 www.nycosh.org)에서 찾아 보실 수 있습니다.

근로자 보상

업무로 인해 질병에 걸리거나 상해를 입은 근로자들은 보상을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뉴욕에서는 합법이민자와 서류미비 이민자가 공히 이러한 자격을 가질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전임 근로자와 시간제 근로자는 근로자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현금으로 급여를 지급받거나 장부에 존재하지 않는 급여를 받거나, 독립된 계약자로 분류되더라도 근로자 보상을 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근로자 보상 혜택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업무상 상해나 질환의 의료 치료와 관리를 위한 보상금 (2) 업무를 지속할 수 없을 정도의 상해나 질환에 대한 현금 보상 (3) 업무와 관련하여 사망한 근로자의 생존 배우자 또는 부양자녀를 위한 사망 보상.

근로자들은 업무 관련 상해에 대하여 고용주에게 직접 또는 서면으로 즉시 알려야 합니다. 근로자 보상 청구의 주요 양식은 C-3 과 C-4 입니다. C-3 은 근로자가 작성하는 신청서입니다. C-4 는 근로자의 담당 의사가 작성하여야 합니다.

이 양식들은 뉴욕시 근로자 보상 위원회(New York State Worker's Compensation Board, WCB)와 위원회의 웹사이트 <http://www.wcb.ny.gov/content/main/Forms.jsp> 에서 구할 수 있습니다.

| 근로자 보상을 위한 c-3 과 c-4 양식은 아래 근로자 보상심의위원회(Workers' Compensation Board)에 제출할 수 있습니다. | |
|---|---|
| Brooklyn | 111 Livingston Street, 22 nd Floor, Brooklyn, NY 11201 |
| Bronx/Manhattan | 215 W. 125th Street, New York, NY 10027 |
| Queens | 168-46 91st Avenue, 3 rd Floor, Jamaica, NY 11432 |
| Staten Island | 60 Bay Street, Staten Island, NY 10301 |

근로자 보상에 관한 더 많은 정보를 얻고 싶으시면 (877) 632-4996 으로 근로자 보상 심의위원회에 연락하십시오.

가족 및 의료 휴가법(FAMILY AND MEDICAL LEAVE ACT, FMLA)

가족 및 의료 휴가법은 75 마일 이내에 최소 50 명의 피고용인을 둔 고용주에게 적용됩니다. 최소 1 년간 동일한 고용주에게 고용되어 일하고, 지난 년도에 최소 1,250 시간 동안 동일한 고용주에게 고용되어 일해 온 근로자는 자녀의 출산이나 입양, 자녀의 양육, 건강상태가 심각한 가족 또는 피고용인 본인의 간호를 위해 매년 최장 12 주의 무급휴가(비연속적일 수 있음)가 가능합니다. 여기서 건강상태가 심각하다는 것은 병원에 입원해야 하거나 보건관리기관의 지속적인 치료를 받아야 하는 모든 질병, 상해, 손상, 신체적 또는 정신적 상태를 말합니다.

피고용인은 적어도 30 일 이전에 사전 통지를 해야 하고 고용주가 요구할 경우 진료 증명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피고용인이 휴가를 가거나 휴가를 신청하는 것에 고용주가 부정적 행동을 취하거나 어떠한 방법으로든 FMLA 가 보장하는 피고용인의 권리를 방해하는 것은 불법 행위입니다.

FMLA 위반에 대해 제소를 하시려면 아래로 연락하십시오. 미국 노동부 임금 및 근로시간과, 26 Federal Plaza, Room 3700, New York, NY 10278, (212) 264-8185 또는 (866) 487-9243.

실업보험

실업보험은 자신의 과실 없이 실직한 근로자로서 일을 할 준비가 되어 있고, 일을 할 의사가 있으며, 일을 할 수 있는 근로자에게 주는 임시 소득입니다.

혜택을 잃지 않으려면 실직 후 신속히 실업보험을 신청해야 합니다. 실업보험을 신청할 때는 신청 절차가 지연되지 않도록 필요한 모든 서류를 구비해야 합니다. 실업보험 신청 시 필요한 정보는 다음과 같습니다.

- 신청인의 소셜시큐리티 번호
- 신청인의 주소와 우편번호
- 업무시간 중 연락 가능한 번호
- 지난 18 개월간 고용되었던 모든 고용주의 정확한 이름, 주소, 우편번호, 전화번호
- 지난 18 개월간 모든 고용주가 지급한 신청인의 총급여액(급여명세서, W-2 등)
- 신청인의 외국인 등록 카드(소유하고 있는 경우)
- 최근 군복무자이었던 경우, 가장 최근의 전역 양식 DD214
- 연방정부 근무자의 경우, SF8 과 SF50 의 사본
- 신청인의 뉴욕 주 운전면허증 또는 차량 ID 카드 번호(소유하고 있는 경우)

실업보험을 신청하려면 (888) 209-8124 로 연락하십시오. 이 번호를 통해 다양한 언어로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또한 웹사이트 <http://www.labor.ny.gov/unemploymentassistance.shtm> 에서 온라인으로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근로자들은 구직 또는 직업훈련에 대한 도움을 어디서 받을 수 있습니까?

뉴욕 시 노동인력 취업센터(NYC Workforce1 Career Centers)에서는 취업 그리고 취업 준비를 도와줍니다. 이 기관에서는 새로운 일자리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구직자들이 연수나 직업 기술 훈련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취업센터는 뉴욕 시 중소기업서비스국, 뉴욕주노동부, 뉴욕시립대가 운영합니다. 취업센터에 연락하시려면 311 로 전화하시거나 아래의 주소로 방문하십시오.

| 뉴욕시 노동인력취업센터(NYC Workforce1 Career Centers) | |
|---|--|
| Bronx | 400 E. Fordham Rd., Bronx, NY 10458 |
| Brooklyn | 9 Bond Street, 5th Floor, Brooklyn, NY 11201 |
| Upper Manhattan | 215 W. 125th Street, 6th Floor, New York, NY 10027 |

| | |
|----------------------|---|
| Queens | 168-25 Jamaica Ave., 2 nd Floor, Jamaica, NY 11432 |
| Staten Island | 120 Stuyvesant Pl., 3rd Floor, Staten Island, NY 10301 |

일용근로자 센터란 무엇입니까?

일용근로자 센터(Day labor worker center)는 길거리에서 일거리를 찾아야 할 노동자들을 지원하고 보호하기 위해 마련된 공간입니다.

일용근로자가 일자리를 기다리느라 주차장에서 서 있는 대신, 일용근로자 센터를 방문한다면 보다 체계적인 방법으로 일자리를 알아볼 수 있으며, 고용주들은 규칙을 준수하여 노동자의 권익을 침해하지 못하게 됩니다. 이는 노동자와 시민의 권리 침해 방지와 근로환경 개선 그리고 임금 체불 방지에 도움이 됩니다.

일용근로자 센터는 일반적으로 최저임금, 초과근무, 건강과 안전, 그리고 기타 노동관련법을 감시하고 집행합니다. 일부 센터는 English as a Second Language (ESL) 강의와 직업 훈련을 제공하기도 합니다.

뉴욕 시에 위치한 일용근로자 센터는 다음과 같습니다.

El Centro Del Inmigrante, 350 Port Richmond Ave 및 1546 Castleton Avenue, Staten Island.

전화: (347) 825-2086. 이메일: info@elcentronyc.org

베이 파크웨이 공동체 직업 센터(Bay Parkway Community Job Center), 8973 Bay Parkway, Brooklyn.

전화: (718) 600-0425. 이메일: info@workersjustice.org

신규 이민자 공동체 증진(New Immigrant Community Empowerment, NICE), 71-21 Roosevelt Avenue, Jackson Heights.

전화: (718) 205-8796. 이메일: info@nynice.org

인신매매란 무엇입니까?

매년 수천 명의 여성 그리고 남성, 어린이들이 매춘, 농업, 가정부, 막노동, 노동착취공장 등과 같은 성매매 혹은 강제노동을 위하여 뉴욕으로 혹은 뉴욕을 거치게 됩니다. 뉴욕에는 인신매매의 피해자를 보호하고 돕는 강력한 법이 있습니다.

인신매매 범죄 신고와 구조신청은 아래로 전화하십시오.

| | |
|--|--------------------------------|
| 인신매매 및 근로자 착취 전담반 신고 라인 | (888) 428-7581 월-금: 9am-5pm |
| 부녀자 교육 및 멘토 서비스(Girls Educational and Mentoring Services, GEMS) | (212) 926-8089 |
| New York County (Manhattan) 지구 변호사 사무소, 성범죄 담당 | (212) 335-9373 |
| Kings County (Brooklyn) 지구 변호사 사무소, 성 인신매매 담당 | (718) 250-2770 |
| Bronx County 지구 변호사 사무소, 아동학대/성범죄과 | (718) 590-2195 |
| Queens County 지구 변호사 사무소, 특수희생자과 | (718) 286-6505 |
| Richmond County (Staten Island) 지구 변호사 사무소, 특수희생자과 | (718) 876-6300 |

세금 신고

왜 세금 신고를 해야 합니까?

- 미국에 거주하는 대부분의 사람은 소득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소득세 신고는 매년 4 월 15 일까지입니다.
- 세금 신고는 다수의 이민 혜택에 대한 자격을 증명할 때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 소득세 신고를 하는 저소득층과 중간 이하 소득층의 경우, 세액공제나 세액환급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누가 세금 신고를 해야 합니까?

거의 대부분의 근로노동자는 세금 신고를 해야 합니다. 기준 금액 미만의 소득자는 세금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하지만 세금 신고가 필요하지 않더라도, 세금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세금 신고가 필요하지 않은 경우이지만 1) 이민과 그 외의 혜택을 획득하기 위해 세금 신고 이력을 쌓거나 2) 세액공제 또는 세금혜택을 받기 위하여 세금 신고를 원할 수 있습니다.

개인 납세자 식별번호(ITIN)란 무엇입니까?

개인 납세자 식별번호란, 개인이 세금 신고와 납세가 가능하도록 국세청(IRS)에서 발급하는 번호입니다. 개인 납세자 식별번호는 소셜시큐리티 번호(SSN)가 없는 사람들이 사용할 수 있습니다. 개인 납세자 식별번호는 합법적 이민자를 포함하여, 소셜시큐리티 번호가 없는 다양한 사람들에게 부여될 수 있기 때문에 이 번호로 이민 신분이 노출되지는 않습니다.

개인 납세자 식별번호가 취업 허가 또는 사회보장 혜택의 자격, 근로소득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자격을 제공하는 것은 아닙니다. 또한 고용을 위해 쓰일 수 없습니다.

| ITIN 신청 방법 | |
|------------|--|
| 신청서 다운로드 | www.irs.gov/pub/irs-pdf/fw7.pdf (영어) www.irs.gov/pub/irs-pdf/fw7sp.pdf (스페인어) |
| 전화 | (800) TAX FORM (829-3676) |

신청서를 아래로 우편 발송하십시오.

Internal Revenue Service Austin Service Center
ITIN Operation
P.O. Box 149342
Austin, TX 78714-9342

또는 공인대행사를 통하거나 납세자지원센터에서 직접 신청하십시오.

근로소득 세액공제(EARNED INCOME TAX CREDIT, EITC)란 무엇입니까?

소득이 특정 금액 미만 근로자 가족은 근로소득 세액공제(EITC), 즉 가족에게 주어지는 일종의 현금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EITC 는 연방, 주, 시 세금을 해당 가족과 개인의 생계비를 보조하기 위해 환급해주는 것입니다. 2017 년에, 소득이 연간 \$48,340(결혼을 하고 공동으로 신청하는 경우에는 \$53,930) 미만인 근로자 가족은 최대 \$6,318 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환급액은 가족의 소득과 개인의 결혼과 자녀 상황에 따라 다릅니다.

EITC 를 신청하려면 해당 납세자는 근로소득이 있어야 하고 세금 신고를 해야 합니다.

EITC 에 대해 더 알고자 하거나 어떻게 신청하는지 알려면 311 로 전화하거나 웹사이트 www.nyc.gov/eitc 를 방문하십시오.

주택

아파트의 상태에 문제가 있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귀하는 소유주에게 아파트를 수리하고 난방과 온수가 공급되도록 요구할 권리가 있습니다. 임대인은 법에 의해 아파트를 안전하고 거주하기에 적당한 상태로 유지해야 하고 난방과 온수를 제공할 의무가 있습니다.

난방이나 온수가 충분하지 않거나 또는 양호하지 않은 임대 아파트에 대한 불만은 311 로 전화하시어 뉴욕 시 주택 보존 및 개발부에 제기하십시오.

소유주가 세입자의 이민 신분을 신고하겠다고 위협한다면 어떻게 하나요?

임대인이 세입자의 이민 신분을 이유로 다른 사람과 차별하겠다고 위협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임대료 규제대상 아파트 거주자가 임대인의 횡포에 대하여 불만을 제기하려면 뉴욕 주 주택 및 지역 개선부 (718) 739-6400 으로 연락하십시오.

임대료 비규제대상 아파트 거주자는 뉴욕 시 인권위원회 (718) 722-3131 로 연락하십시오.

만일 제가 홈리스라면 어디에 도움을 청할 수 있습니까?

이민 신분과 상관없이 누구든지 비상 보호소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만약 귀하가 홈리스인 경우 지원을 받으려면 뉴욕 시 홈리스 복지국에 (800) 994-6494 로 연락 하십시오.

주택에 대한 더 많은 정보를 얻으시려면 공공주택 부분(16 페이지)을 참고하십시오.

시민권

미국 시민권 신청은 누가 할 수 있습니까?

다음과 같은 사람은 미국 시민권을 신청할 자격이 있습니다.

- 영주권자이면서 18 세 이상인 사람
- 최소 5 년간 영주권자로 미국에서 살았거나 미국 시민권자와 3 년 동안 결혼 및 동거한 사람
- '올바른 도덕적 인격'을 보여줄 수 있는 사람
- 영어를 읽고, 말하고, 쓸 수 있으며 미국 역사와 정부에 대해 이해하고 있는 사람

기준 이상의 고령자나 장애인은 영어에 대한 요건을 면제받을 수도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사람은 영어에 대한 요건을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 50 세 이상이면서 미국에서 20 년간 거주한 사람
- 55 세 이상이면서 미국에서 15 년간 거주한 사람

위의 경우에도 미국 정부와 역사에 대한 지식은 갖추어야 하지만 신청인의 모국어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모국어로 시행되는 시험은 구술로 시행됩니다. 읽기와 쓰기 능력은 평가하지 않습니다.

특정 장애를 가진 사람은 영어, 그리고 미국 역사 및 정부에 대한 요건을 면제 받을 수 있습니다.

시민권을 신청하기 전에 유능한 변호사나 컨설턴트와 상의하여 귀하가 시민권을 신청할 자격이 있고 준비가 되어있는지 확인하십시오. 한편, 변호사나 컨설턴트를 선택할 때 매우 신중해야 합니다. 부실하거나 잘못된 이민 상담을 받는 것은 위험하며 시간과 비용을 낭비하고 경우에 따라 추방당할 수도 있습니다.

시민권과 이민 문제에 대한 법적 지원은 다음과 같은 기관에서 받으실 수 있습니다.

| | |
|---|---|
| New York 시 이민 핫라인 | (212) 419-3737 or (800) 566-7636 |
| 변호사협회 추천 패널 | (212) 626-7373 <i>(To find a private attorney)</i> |
| Northern Manhattan 이민자 권리를 위한 연합(Coalition for Immigrants Rights, NMCIR) | (212) 781-0355 x305 <i>(for free assistance with citizenship applications)</i> |
| 뉴욕시립대 깨어있는 시민!(CUNY Citizenship Now! Centers) | <p>Immigration Center at City College North Academic Center, Room 1-206 160 Convent Avenue New York, NY 10031 (212) 650-6620</p> <p>Immigration Center at Hostos Community College 427 Walton Avenue, T-501 Bronx, NY 10451 (718) 518-4395</p> <p>Medgar Evers College Immigration Center 1150 Carroll St., Rm. 226 Brooklyn, NY 11225 (718) 270-6292</p> <p>Flushing Immigration Center 39-07 Prince Street, Suite 2B Flushing, NY 11354 (718) 640-9223</p> <p>CUNY Immigration Center at York College 94-20 Guy R. Brewer Blvd. Welcome Center Atrium Jamaica, NY 11451 (718) 262-2983</p> |
| 뉴욕 법률 지원 그룹(New York Legal Assistance Group, NYLAG) – 이민자 보호과 | (212) 613-5000 |

미국 시민권 신청은 어떻게 합니까?

- **신청** - 시민권 신청을 결정하고, 자격에 문제가 없으며, 지원에 위험이 없다고 판단하는 경우(지원에 위험 부담이 있는지 여부에 관한 법적 자문을 받을 것을 권함), 신청서(N- 400

양식)와 신청 수수료를 미 이민국(USCIS)에 제출해야 합니다. 2017 년의 경우, 대부분 신청자들의 신청 수수료는 \$725(접수 수수료 \$640 + 생체 측정 비용 \$85)입니다. USCIS 는 신청자의 지문을 채취하고 배경 조사를 실시해서 잠재적 안보 위협을 식별하기 위해 약속을 정합니다.

- **예외** - 단, 다음과 같은 사람은 \$725 중 일부만 지불할 수 있습니다.
 - 75 세 이상의 신청자는 생체 측정 비용 \$85 를 지불하지 않아도 됩니다.
 - 「이민국적법(Immigration and Nationality Act, INA)」제 328 조와 제 329 조에 의거하여 접수하는 군인 신청자에게는 접수 수수료나 생체 측정 비용이 부과되지 않습니다.
- **수수료 면제** - \$725 의 수수료를 지불할 수 없는 신청자는 I-912 양식(제목: 수수료 면제 요청)을 사용해서 수수료 면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자가 전체 수수료 면제를 받으려면 다음 요건 중 하나를 충족해야 합니다.
 - 신청자가 현재 자산 조사 결과에 따른 복지 수당을 수령하고 있는 경우
 - 신청자의 가계 소득이 신청서 접수 시점에서 연방 빈곤 수준의 150% 이하인 경우
 - 신청자에게 경제적 어려움(예상치 못한 긴급 상황, 의료 비용 포함)이 있어서 접수 비용을 지불할 수 없는 경우
 - 소득이 연방 빈곤 수준 150%~200%인 사람은 수수료 부분 면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인터뷰** - 신청서가 제출된 뒤, USCIS 에서는 신청자와 면접 일시를 정합니다. 면접에서 신청자는 몇 가지 질문에 답하고 어떤 과제를 수행하면서 영어 능력과 미국 역사와 정부에 대한 지식을 보여 주어야 합니다.
- **서약과 선서** - 신청이 승인되면 신청자는 충성의 맹세를 하고 타 국가에 대한 충성과 권리를 포기하며 미국의 헌법과 법률에 대한 지지와 수호를 맹세해야 합니다.

USCIS 는 서약의 의미를 이해할 수 없거나 이해하기 위해 필요한 의사소통이 불가능한 중증 장애의 신청자에게는 서약 요구를 면제할 수 있습니다.

| USCIS 에 관한 더 자세한 정보 | |
|--|--|
| USCIS 웹사이트/인터넷 서비스 (귀화 인터뷰 질문, 새소식, 기타 USCIS 양식) | www.uscis.gov |
| USCIS National Customer Service 이민 혜택과 서비스, 신청 신분, 지문채취, 지방 USCIS 위치, USCIS 가 인정한 메디컬 테스트 담당의사에 관한 정보 | (800) 375-5283 |
| 우편으로 USCIS 양식을 구하려는 경우 | (800) 870-3676 |
| 특정 서비스에 등록하려 할 때 연락처: 선발 징병제 (선발 징병제는 귀화의 요건임) | (888) 655-1825 www.sss.gov |

새로 미국 시민이 된 사람의 권리와 의무는 무엇입니까?

- 선거에서의 투표: 시민권자는 미국 정부의 법과 정책을 입안하는 선출직 공무원을 투표할 권리가 있습니다.
- 제한 없는 여행: 시민권자는 원하는 만큼 미국을 떠나 다른 나라에서 거주할 수 있습니다. 장기간 미국이 아닌 국가에서 거주한 영주권자는 법적 지위를 잃을 수 있습니다.
- 더 많은 가족 구성원들을 위한 청원: 시민권자는 영주권자 보다 더 많은 가족 구성원들이 미국에서 살 수 있게 청원을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시민권자는 배우자, 미성년 미혼 자녀, 부모를 장기간 기다리지 않고 미국에 데려올 수 있습니다.
- 추방 면제: 시민권자는 미국 입국이 보장되며 미국에서 추방되지 않습니다. 시민권자는 매우 제한된 상황에서만 시민권을 잃을 수 있습니다.
- 배심원 봉사: 시민권자는 법정의 요구가 있을 때 법정에서 배심원으로 봉사해야 하는 의무가 있습니다.
- 공직 수행: 미국 시민권은 일반적으로 시/주/연방 선출직 직책과 연방/주 정부의 특정 직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합니다.

미국 시민권 신청에 따른 위험에는 어떤 것이 있습니까?

범죄 전력이 있는 이민자들은 미국 시민권 신청 전에 변호사와 상담해야 합니다. 특정 종류의 범죄 전력이 있는 사람들은 추방될 수 있고 그들이 시민권을 신청함으로써 USCIS 의 주의를 받을 수 있습니다.

유죄 전과를 가지고 있다면 어떻게 됩니까?

시민권 신청자는 다음의 범죄 중 하나에 대한 유죄 판결을 받았다면 추방될 위험이 있습니다.

- 도덕성 범죄(crimes involving moral turpitude, CIMT). 이러한 종류의 범죄행위는 명확하게 정의하기 어렵습니다. 예를 들어, 한정할 수 없지만 절도나 사기의 의도를 가진 범죄(단순절도, 특수절도, 강도), 특정 폭력범죄, 대부분의 성범죄 등입니다.
- 총기 또는 파괴무기 범죄 약물 범죄(예: 무기가 총일 경우 - 무기의 형법상의 점유)
- 30 그램 이하의 마리화나 소지 초범은 제외됩니다.
- 가정폭력, 스토킹, 아동 학대•방치•유기와 같은 가정과 아동 대상 범죄와 이러한 범죄의 민•형사 유죄판결에 따른 보호명령 위반 또는 1996 년 10 월 1 일 이후의 보호명령 위반
- 여러 종류의 약물 소지 위반을 포함하여 마약밀매와 같은 가중범죄 또는 1 년형의 징역에 처해지거나 계류중인 특정 폭력 범죄와 절도나 주거침입 절도죄, 특정 서류 위조 범죄, 특정 사기 범죄, \$10,000 를 초과하는 손실을 입힌 탈세나 사기, 특정 매춘사업 범죄, 밀입국 주선 범죄와 살인, 강간 또는 미성년자 성적 학대
- 국가안보와 이민과 관련된 그 밖의 범죄

범죄 전력이 있는 사람의 이민 결과에 대한 정보를 더 얻고 싶으시면 다음과 같은 기관으로 연락하십시오.

| | |
|--|---|
| <p>이민자 보호 프로젝트(Immigrant Defense Project)</p> | <p>(212) 725-6422 로 연락 또는 http://www.immdefense.org/ 방문 (이민 변호 사업 또한 범죄나 이민 관련 문제와 그 밖의 이민 시행관련 문제들에 대한 교육을 합니다. 그룹이나 기관 단위의 교육을 위 기관에 요청하실 수 있습니다.)</p> |
| <p>뉴욕시립대 깨어있는 시민!(CUNY Citizenship Now!)</p> | <p>(646) 344-7245</p> |

영주권

영주권 취득은 어떻게 합니까?

“그린카드”로 알려져 있는 영주권을 취득하는 데는 다음과 같은 몇 가지 일반적인 방법이 있습니다.

- 시민권이나 영주권을 가진 직계가족이 보증하는 사람
- 고용주가 취업이민비자를 청원한 사람
- 미국무부가 특정 국가 국민들에게 제공하는 영주권 추첨제도를 통해 비자를 신청한 사람

이민자들은 미국에서 범죄 또는 가정폭력의 피해자이거나, 위험하거나 정치적 박해를 받는 국가에서 오는 등의 인도주의적 차원에서 합법적 신분을 취득할 수도 있습니다.

위와 같은 범죄들로 피해를 입었고 범죄 수사시 적극적으로 공무원을 도운 범죄 피해자와 같은 사람들은 U 비자를 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모국에서 박해를 받는 사람들은 망명을 할 수 있습니다.

서류미비 이민자이면서 미국에 거주하는 사람은 합법적 신분을 취득하지 못할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서류미비 이민자는 합법적 거주자로 만들어 주겠다고 약속하고 이민 신청 비용을 요구하는 사람을 매우 조심해야 합니다.

영주권에 대해 더 많은 정보를 원하시면 New Americans Hotline 뉴욕 사무소로 전화하십시오: (212) 419-3737 또는 (800) 566-7636.

영주권을 이미 신청하였는데 절차가 지연되고 있는 경우, 처리 상황을 확인하는 것을 도와 줄 미국내 대리인 또는 상원의원, 뉴욕시장 사무실의 이민자 관련 부서에 연락하실 수 있습니다. 311 로 전화하시면 위의 부서들의 연락처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민에 관한 행정 조치

청소년 추방유예(DEFERRED ACTION FOR CHILDHOOD ARRIVALS, DACA)

2012년 6월, 오바마 대통령은 아동 시절에 미국에 도착한 사람들의 임시 미국 체류를 허용하는 청소년 추방유예(Deferred Action for Childhood Arrivals, DACA) 프로그램을 발표하였습니다. DACA는 일종의 임시 미국 체류 허가("추방유예")와 더불어 2년간의 취업 허가를 제공합니다. 2012년 6월 15일에 31세 미만이었으며, 2007년 6월 15일 이래로 계속 미국에 거주해온 신청자만 DACA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업데이트: 2017년 9월 5일, 트럼프 행정부는 DACA 프로그램을 종료하겠다고 발표했으며, 6개월 내에 DACA 수혜자 신분에 대해 다른 법안을 심의할 것을 미 의회에 요청하였습니다. 본 안내서의 출판 시점을 기준으로, 의회는 대통령의 요청에 대한 조치를 취하고 있지 않습니다. 가장 최근의 정보를 확인하려면 1-800-375-5283으로 USCIS에 전화하십시오.

불법체류에 대한 임시면제

오바마 대통령의 행정조치의 결과, DACA의 대상이 되지 못하는 일부 서류미비 이민자는 미국 내 불법체류에 대한 임시면제를 위한 자격이 있습니다. 이 면제에 기인한 신청 접수 여부는 USCIS에 확인하십시오. 1-800-375-5283로 USCIS로 전화하거나 그 웹사이트 www.uscis.gov/immigrationaction를 방문하십시오.

불법체류, 서류미비 이민자를 위한 임시면제의 자격을 갖추려면 아래 범주를 만족하여야 합니다.

- 최소한 180일 이상 미국 내에서 불법으로 체류한 사람으로서
 - 미국 시민권자의 자녀
 - 영주권자의 배우자 또는 미혼 자녀

만약 경찰에 체포된 적이 있거나, 경찰과 문제가 있었다면 반드시 신청 전에 변호사와 상담하십시오.

연기 조치에 대하여 보다 상세한 정보는 1-800-375-5283 으로 USCIS 에, 또는 (212) 419-3737 혹은 (800) 566-7636 번으로 New Americans Hotline 뉴욕 사무소에 확인하십시오.

보호자 없는 미성년 이민자

부모나 보호자가 없는 미성년 이민자가 강제퇴거 혹은 법적 추방 절차에 처한 경우, 연방법은 이민 절차를 기다리는 동안 그들에게 음식과 주거 및 필요한 보호를 제공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보호자 없는 미성년자에게 어떤 서비스가 제공됩니까?

미국 보건인적서비스부(HHS)의 피난민 재정착사무소(Office of Refugee Resettlement, ORR)는 보호자 없는 미성년 이민자를 그들을 보호하고 복지를 제공할 스폰서에게 관리를 맡깁니다. 스폰서의 보호 하에 있으며 그들의 이민 사건이 끝나는 것을 기다리는 동안 보호자 없는 미성년자는 아래와 같은 서비스를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 건강 관리
- 소셜 서비스 지원
- 교육에로의 접근과 지원

위의 서비스 이외에, 뉴욕 시에 소재한 많은 뉴욕 시와 뉴욕주의 비영리기관은 보호자 없는 미성년자에게 직접적인 법률적, 사회적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보호자 없는 미성년 이민자들을 위한 지원과 서비스에 대하여 문의하려면 전화(212) 788-7654 로 시장실의 이민업무사무소에 연락하거나 전화(212) 627-2227 로 뉴욕 이민자 연합에 문의할 수 있습니다.

투표와 참여

유권자 등록은 누가 할 수 있습니까?

선거에서 투표를 하려면 반드시 유권자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유권자 등록을 할 수 있는 사람은 다음과 같습니다.

- 미국 시민권자
- 선거 전 최소 18 세 이상인 사람
- 뉴욕 시에 최소 30 일 이상 거주한 사람
- 투옥 중이거나 중죄판결을 받고 가석방 중인 상태가 아닌 사람
- 법원에서 정신적으로 무능력자로 선고 받지 않은 사람
- 뉴욕 시 외에 다른 곳에서 선거권을 행사하지 않은 사람

만약 귀하가 등록된 투표권자인데 주소가 바뀌셨다면 뉴욕 주 법에 따라 주소가 바뀐 날로부터 25 일 내에 선거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합니다.

유권자 등록은 어떻게 합니까?

유권자 등록을 하기 위해서는 유권자 등록 양식을 작성하여 제출하셔야 합니다. 등록 양식은 영어, 스페인어, 중국어, 한국어 및 벵골어가 지원됩니다. 등록 양식을 작성하신 후 우편으로 또는 직접 제출해 주십시오.

등록양식은 <http://vote.nyc.ny.us/html/voters/voters.shtml> 에서 다운로드하거나, (866) 868-3692 로 전화 혹은 아래 뉴욕 시 선거관리위원회 사무실을 방문하십시오.

| | |
|--------------------|---|
| Main Office | 32 - 42 Broadway, 7 th Floor New York, NY 10004 (212) 487-5400 |
| Manhattan | 200 Varick Street, 10 th Floor New York, NY 10014 (212) 886-2100 |
| Bronx | 1780 Grand Concourse, 5 th Floor Bronx, NY 10457 (718) 299-9017 |

| | |
|----------------------|---|
| Brooklyn | 345 Adams Street, 4 th Floor Brooklyn, NY 11201 (718) 797-8800 |
| Queens | 118-35 Queens Boulevard Forest Hills, NY 11375 (718) 730-6730 |
| Staten Island | 1 Edgewater Plaza, 4 th Floor Staten Island, NY 10305 (718) 876-0079 |

반드시 선거일 최소 25 일 전에는 등록 양식을 직접 제출하거나, 기간 내 우편 소인 도장이 찍힌 신청서를 우편으로 송부하셔야 합니다.

만약 글을 읽지 못하시면 타인에게 도움을 받아서 신청서를 작성하여 등록하실 수 있습니다. 귀하의 성함을 서명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서명란에 “X”표를 하시고 보증인란에 보증인의 서명을 받으십시오.

유권자 등록신청서를 작성한 후에 신청서를 우편으로 또는 직접 선거위원회 주 사무실(주소: 32 - 42 Broadway, 7th Floor, New York, NY 10004)로 보내십시오. 또는 귀하가 거주하는 해당 보로의 선거위원회 사무실에 직접 제출하십시오.

투표는 어디에서 합니까?

유권자 등록을 하면 선거위원회에서 투표장소에 대한 통지를 보냅니다. 또는 직접 (212) VOTE-NYC (212-868-3692)로 전화해서 투표 장소에 대해 문의할 수 있습니다. 투표소는 선거일 아침 6시부터 오후 9시까지 운영됩니다.

부재자 투표는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선거일에 귀하의 업무, 사업, 학업, 여행, 구금이나 질병, 장애, 입원, 장기간의 요양원 거주 등의 이유로 투표소에 올 수 없는 경우는 부재자 투표를 통해 투표할 수 있습니다.

부재자 투표는 다음과 같이 할 수 있습니다.

- 직접 투표: 선거 시작 32 일 전에서 선거일까지 해당 보로의 선거위원회를 방문하십시오. 선거 기간에는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 투표할 수 있고

선거일에는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그리고 선거일 바로 전 주말에는 오후 9 시까지 투표할 수 있습니다.

- 우편 투표: 부재자 투표 신청서를 요청하여 제출하십시오. 신청서는 영어, 스페인어, 중국어, 한국어 및 벵골어를 지원합니다. 신청서를 제출하면 투표할 때 사용할 수 있는 부재자 투표용지를 받게 됩니다.

부재자 투표용지 신청서를 요청하려면 (212)VOTE-NYC ((212)868-3692)로 전화하여 신청서를 우편으로 발송하여 줄 것을 요청하십시오. 혹은 웹사이트 <http://www.vote.nyc.ny.us/html/voters/absentee.shtml>에서 서식을 내려받거나 귀하의 해당 보로 선거위원회 사무실을 방문하십시오.

- 부재자 투표 신청서 작성시 파란색이나 검정색 펜만 사용하십시오.
- 신청서를 팩스로 보낼 수 없습니다. 우편으로 또는 직접 제출하십시오.

부재자 투표용지를 작성하여 반드시 투표일 투표소가 폐쇄되기 전까지 선거위원회에 직접 제출하거나 늦어도 선거기간 전 날짜 우편소인이 찍힌 우편으로 보내주십시오. 또한, 늦어도 투표일 후 7 일 이내에 선거위원회에 도착하여야 합니다.

만약 귀하가 영구적인 질병이나 장애때문에 투표하러 투표소에 가실 수 없는 경우에도 부재자 투표를 신청할 수 있으며, 매번 선거가 있을 때마다 자동적으로 부재자 용지를 받아볼 수 있도록 요청할 수 있습니다.

긴급 부재자 투표는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만약 우편을 통한 부재자 투표 요청 기간이 지났지만, 투표일에 사고나 갑작스런 질병 등으로 투표소에 갈 수 없는 경우에는 위임장을 지참한 대리인을 보내 부재자 투표 신청서와 부재자 투표지를 수령하고, 이 둘을 선거일 오후 9 시까지 귀하가 거주하는 해당 보로의 선거위원회 사무실에 제출하면 됩니다.

투표자의 권리는 무엇입니까?

- 모든 등록된 유권자들은 다섯 개 보로에 있는 정해진 투표소에서 스페인어, 중국어, 한국어, 힌디어 혹은 벵골어로 번역 혹은 통역을 요청하고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스페인어, 중국어, 힌디어, 벵골어 혹은 한국어로 지원되는 서류에는 투표 용지, 투표자 등록 양식, 투표

안내문과 여타 투표 관련 자료 등이 있습니다. 또한 일부 투표소에서는 러시아어, 아이티 프랑스어, 벵골어, 우르두어를 할 수 있는 선거위원회 직원들이 정보의 번역과 통역을 도울 수 있습니다.

- 장애가 있는 유권자들은 투표를 하기 위해 정해진 편의시설의 도움을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 투표를 사용법에 대한 설명을 요구할 권리가 있습니다.
- 고용주 또는 귀하가 속한 조합 대표를 제외한 사람과 함께 부스 안에 들어가서 귀하의 투표를 도울 수 있습니다.
- 만약 등록된 유권자인데 귀하의 이름이 유권자 등록 명단에 입력되어 있지 않거나 서명이 없을 경우에는 선서에 의한 투표를 할 수 있습니다.

투표장소에 관련된 정보를 얻고 싶거나 투표일에 종이투표를 행사할 수 없도록 제지당하거나, 어떤 방식으로든지 투표권을 행사할 수 없는 문제가 생긴 경우에는 (212) 349-6460 으로 NYPIRG 혹은 (212)487-5400 으로 선거위원회에 전화하십시오.

투표를 할 때 신분증을 제시해야 합니까?

새로 투표권을 얻은 유권자들은 투표소에서 신분증을 제시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2003 년 1 월 1 일 이후에 처음으로 투표하는 유권자 중에 유권자 등록을 우편으로 하였고, 신분증을 신청서에 첨부하지 않았던 유권자는 뉴욕에서 실시하는 연방 선거에서 신분증을 제시해야 합니다. 이러한 유권자들은 투표소에서 다음과 같은 신분을 증명하는 문서들을 제시해야 합니다.

- 운전 면허증이나 차량 운전 등록처에서 발행하는 비운전자 사진 신분증이나 현재 유효한 다른 종류의 사진 신분증
- 최근의 제세 공과금 납부 영수증 복사본, 은행 예금 잔고 문서, 정부발행 수표, 급여수표 혹은 투표자의 이름과 주소가 인쇄된 다른 정부발행 문서들

투표자가 위와 같은 신분증이 없을 경우에도 그의 해당 투표소에서 종이 (선서) 투표용지로 투표할 수 있습니다.

선거에 대해 무엇을 알아야 하나요?

일반적으로 선거에는 예비 선거와 본 선거 두 가지가 있습니다. 뉴욕에서 예비 선거는 본 선거에 앞서 실시됩니다.

예비 선거는 특정 당에 등록된 유권자가 본 선거에 출마할 후보자들을 지명하기 위한 선거입니다. 예비 선거는 연방후보인 경우 주로 6 월에, 주 후보인 경우 주로 9 월에 실시됩니다. 각 정당에 등록된 유권자만 그 정당의 예비선거에서 투표할 수 있습니다.

본 선거는 일반적으로 11 월에 시행되는데 대통령, 주지사, 국회의원, 시장, 지방의회의원이나 다른 고위 공무원들에 대한 최종 결정을 하기 위한 선거입니다. 등록된 유권자는 누구나 본 선거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본 선거에서 각각 다른 정당에서 출마한 후보자들이 서로 경쟁하게 됩니다.

지역 사회나 정부에 어떻게 참여할 수 있습니까?

- 구역모임, 시민 단체, 비영리단체와 같은 지역사회 모임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 귀하의 지역 위원회에 참여할 수 있으며, 위원이 될 수 있으며, 위원회의 주요문제에 관한 의견을 위원회에 제시할 수 있습니다. 더 많은 정보를 원하신다면 아래를 참고하십시오.
- 지역 경찰 관할 위원에 선출되어 지역 경찰서에 귀하의 관심을 반영하실 수 있습니다.
- 청년과 지역사회개발부의 지역사회 자문위원회에 참여하거나 자문위원이 되어 시 정부 관리에게 지역사회에 필요한 것들이 무엇이고 어떤 프로그램들이 중요한지에 대해 의견을 낼 수 있습니다.
- 정치 캠페인에 자원봉사를 하거나 시위에 참가하거나 선출된 대표자들에게 글을 쓰거나 전화할 수 있습니다.
- 새로운 정보에 관심을 가지십시오. 친구들이나 이웃들과 토론하고, 신문을 읽고, 지역사회·시·주·국가와 관련된 중요한 쟁점들을 숙지하십시오.
- 지역 의원들이 당선된 후에 어떤 일들을 수행하는지 늘 관심을 기울이십시오. 의원들이 선거공약 때 약속했던 것들을 지키고 있는지 확인하십시오. 의원들과 귀하의 의견을 공유하고, 협조를 요청하십시오.

지역위원회란 무엇이며 어떻게 참여할 수 있습니까?

지역위원회란 보로청장이 임명한 50 명 이상의 무급 위원들로 구성된 지역 대표 단체입니다. 위원의 절반은 그 지역을 대표하는 시 의회의원들이 지명합니다. 뉴욕 시에는 59 개의

지역위원회가 있으며 지역위원회 위원은 반드시 그 지역에서 거주하거나, 일을 하거나, 대표할 지역에 대한 특별한 관심이 있어야 합니다.

위원회는 한 달에 한 번 회의를 합니다. 위원회 회의는 일반에 공개되며, 매 회의마다 시민의 의견을 듣는 공청회 시간을 따로 마련합니다. 또한 위원회는 정기적으로 시 예산, 토지 이용 문제 혹은 다른 주요 쟁점에 대한 공청회를 열어 지역위원들의 의견을 반영할 기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지역위원회는 지역 내에 시에서 관리하는 대부분의 시설의 배치와 그 밖의 토지 이용 관련 안건에 대해서 의논합니다. 또한 지역의 성장과 발전을 위한 계획을 제안하여야 합니다. 또한 뉴욕 시의 구획 변경에 관한 안건은 지역위원회에 상정되어 검토되어야 하며, 이 안건의 최종 결정 시에는 지역위원회의 입장이 고려됩니다.

지역 의원회는 해당 구역의 요구를 평가하며, 시 행정단체들과 면담을 하여 시 의회의 예산 과정에 시민의 요구를 반영하고, 시 기관과 회동을 가집니다.

귀하의 보로에서 지역위원회 활동 참여 방법에 관한 자세한 사항이나 위원으로 선출되려면 아래 기재된 귀하의 보로 청장과 연락 바랍니다.

| 귀하가 거주하는 보로 청장실과 연락하십시오. | |
|--|--|
| Bronx Ruben Diaz Jr. Borough President | 851 Grand Concourse, 3rd Floor Bronx, N.Y. 10451 (718) 590-3500 http://bronxboropres.nyc.gov/ |
| Brooklyn Eric L. Adams Borough President | 209 Joralemon Street Brooklyn, N.Y. 11201 (718) 802-3700 http://www.brooklyn-usa.org/ |
| Manhattan Gale A. Brewer Borough President | 1 Centre Street, 19th Floor New York, N.Y. 10007 (212) 669-8300 http://manhattanbp.nyc.gov/html/home/home.shtml |
| Queens Melinda Katz Borough President | 120-55 Queens Blvd. Kew Gardens, N.Y. 11424 (718) 286-3000 http://queensbp.org/ |
| Staten Island James S. Oddo Borough President | 10 Richmond Terrace, Room 120 Staten Island, N.Y. 10301 (718) 816-2000 http://www.statenislandusa.com/ |

소비자 권리와 금전적 권리

은행계좌 개설시 어떤 종류의 신분증이 필요합니까?

많은 은행에서는 각각 다른 종류의 신분증을 인정하는데 개인 납세자 식별번호(Individual Tax Identification Number, ITIN)나 미국 정부나 외국정부가 발행한 사진이 있는 신분증의 번호, (여권이나 영사 확인증과 같은) 다른 종류의 신분을 증명하는 서류들의 번호를 요구할 수도 있습니다. 영사 확인증에는 사진, 국내 주소, 출생지역과 독특한 신분증 번호가 있지만 영사 확인증으로 이민 신분을 알 수 없기 때문에, 영사확인증은 이민자들이 은행업무를 처리할 때 유용한 도구로 사용됩니다. 뉴욕의 일부 은행들은 영사확인증을 인정합니다. 점점 더 많은 수의 뉴욕 시 은행과 신용 조합이 IDNYC 도 인정하는 추세입니다. IDNYC 를 사용할 수 있는 은행과 신용 조합의 목록은 IDNYC 웹사이트 <http://www1.nyc.gov/site/idnyc/benefits/banks-and-credit-unions.page> 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서류미비 이민자가 대출을 받거나 신용카드를 사용할 수 있습니까?

사용 할 수 있습니다. 많은 은행들, 신용조합들, 그리고 다른 대출업자들이 개인 납세자 식별번호(ITIN)가 있다면 신용카드를 발급하고 개인 대출, 사업 대출, 주택담보대출을 제공합니다. 은행과 신용조합과 대출업자는 대출과 대출의 상환정보를 신용평가기관에 통보합니다.

양호한 신용 기록을 쌓는 것은 여러 가지 면에서 아주 중요합니다. 양호한 신용 기록은 저금리와 적은 비용으로 대출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을 갖추는 데 도움이 됩니다. 또한 신용 기록은 고용주, 지주, 보증 회사들이 특정 개인에게 일자리 제공, 아파트, 그 밖에 금전적 혜택과 관련된 결정을 할 때 고려 사항이 될 수 있습니다.

양호한 신용 기록을 만드는 것이 중요합니다. 대출을 받거나 신용카드를 사용하는 사람은 반드시 대출을 상환하고 본인의 신용평가보고를 확인해야 합니다. 또한 정확한 신용평가보고가 되기 위해 신용평가보고에 오류가 있는지 주의해서 살펴보십시오.

금융 지원 센터(FINANCIAL EMPOWERMENT CENTERS)는 어떤 일을 합니까?

2008 년 뉴욕 시정부에서는 저소득층 주민들의 재정적 안정을 돕기 위해 금융 지원 센터를 설립하였습니다. 현재, 뉴욕 시에는 5 개 보로에 금융지원센터가 개설되었습니다. 이 센터들은 뉴욕 시 주민들에게 개방되어 있으며, 주민들에게 다음과 같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 금전 관리와 예산 관리
- 재정 계획
- 신용과 채무 상담
- 채권자 대처방안 지원
- 재정적으로 알맞은 은행 서비스
- 정부 혜택 선별
- 그 밖의 서비스나 서비스 제공기관 추천

금융 지원 센터에 대하여 더 많은 정보를 원하면 소비자부의 금융

지원사무소(Department of Consumer Affairs Office of Financial

Empowerment)에 311 번으로 전화하거나 웹사이트

<http://www1.nyc.gov/site/dca/partners/financial-empowerment.page> *를*

방문하십시오.

테이크 잇 투 더 뱅크(TAKE IT TO THE BANK): 뉴요커를 위한 적절한 당좌 예금 옵션 안내서

뉴욕 시 감사원장실은 시민들이 적절한 당좌 예금 계좌를 찾고 비교해보는 것을 돕기 위해 *테이크 잇 투 더 뱅크*라는 온라인 리소스를 제작했습니다.

은행 계좌를 개설하면 돈을 안전하게 저축하고 불릴 수 있습니다. 수표를 사용하는 뉴욕 시민은 자신의 돈에 접근하는 데에만 연간 몇 백 달러를 지불하곤 합니다. 그에 반해, 은행들은 아주 적은 비용이나 무료로 임금을 바로 예금하고, 돈에 접근하고, 청구서를 지불할 수 있는 기능과 같은 유용한 툴을 제공합니다. 고정적인 수입이 있으며 주기적으로 청구서를 지불한다면 은행 계좌는 재정적 안정성 개선을 위한 중요한 단계가 될 것입니다.

한편, 계좌 개설에 앞서 은행 계좌의 규칙과 비용을 잘 이해해야 합니다. 또한 모든 계좌가 서로 상이하므로 먼저 다음 질문들을 물어보는 것을 고려해볼 수도 있습니다.

- 계좌 개설에 필요한 수수료는 얼마입니까?
- 월간 계좌 수수료는 얼마입니까? 이 비용을 지불하지 않을 방법이 있습니까?
- 매달 계좌에 특정 금액이 있어야 합니까?
- 다른 은행의 ATM 사용 시 수수료가 부과됩니까?
- 매달 몇 건의 거래를 무료로 할 수 있습니까?
- 만약 제가 계좌 잔액보다 높은 금액의 수표를 작성(흔히 “초과 인출”이라고 함)하면 어떻게 됩니까?

*테이크 잇 투 더 뱅크*는 여러 은행의 수수료와 규칙을 비교해서 귀하의 필요성에 부합하는 적절한 계좌를 찾는 것을 도와줍니다. 여기에는 특정 언어로 서비스를 제공하며 IDNYC 를 사용할 수 있는 은행의 위치를 찾는 것도 포함됩니다. *테이크 잇 투 더 뱅크* 웹사이트(www.takeittothebank.nyc)를 방문해보십시오.

이민 서비스

많은 이민자들이 정직하지 않은 이민 서비스 제공자에게 사기를 당하고 곤란한 상황에 처합니다. 이민 서비스를 원하는 사람은 누구나 자격을 갖춘 이민 상담자나 변호사를 신중하게 선택해야 합니다. 일부 이민 상담자들은 고객에게 특정 결과에 대해 거짓으로 보증하거나, 사기성 광고를 하거나, 부당한 비용을 청구합니다. 이민자들은 이러한 사례에 대해 항상 인지하고 상담자를 찾아야 합니다.

뉴욕 시 법은 이민 관련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개인이나 사업체(변호사나 비영리단체나 정부기관이 아닌)가 다음과 같이 하도록 하여 이민 사기를 당하지 않도록 보호합니다.

- 고객에게 부과되는 모든 서비스와 수수료와 비용에 대한 서면 계약서 제공해야 하며 계약서는 영어와 고객이 이해하는 언어로 작성되어야 합니다.
- 고객이 계약을 체결한 지 3 일 이내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고 모든 비용을 환불받을 수 있도록 허용해야 합니다.
- 광고에서 서비스 제공자가 변호사나 이민민원위원회가 공인한 사람이 아니라는 것과 그들이 법적 조언을 할 수 없다는 것을 알려야 합니다. 알림문은 서비스가 제공되는 모든 언어로 눈에 잘 띄게 게시되어야 합니다.
- 고객을 위해 준비하고 획득한 모든 기록의 복사물들을 3 년 동안 보관해야 합니다.
- \$50,000 의 담보채권을 유지해야 합니다.

다음은 이민 서비스 제공자가 해서는 안 되는 것들입니다.

- 정부 문서 양식을 제공하거나 작성하는 것에 대한 비용 청구
- 이행되지 않은 서비스에 대한 요금 부과
- 고객을 위해 제출된 문서의 복사본을 고객에게 제공 않거나 원본을 돌려 주지 않음
- 제공자가 이민 문제에 대해 조언을 할 때 제공자가 특별한 전문지식을 가지고 있거나 어떤 권위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고객이 착각하게 하려고 영어 또는 그 밖의 언어로 변호사의 지위나 그 밖의 증명서를 이용
- 법률 서비스 광고와 법률 조언(허가를 받지 않은 경우)
- 정부관리나 정부기관에 특별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다고 암시하거나 약속이나 보장이 문서화되지 않고 그 약속과 보장에 근거가 없는 상태에서 어떤 약속을 하고 보장을 함
- 고객에게 알리지 않거나 고객의 동의 없이 이민국이나 다른 기관에 관련 정보를 공개하거나 관련 양식이나 서류를 제출함

이민 서비스 제공자에 관한 불만을 제기하려면 아래로 연락하십시오.

| | |
|--|----------------------------------|
| NYC Department of Consumer Affairs (DCA) | 311 |
| New York State Attorney General | (800) 771-7755 |
| Brooklyn District Attorney's Immigrant Affairs Program | (718) 250-3333 |
| Manhattan District Attorney's Immigrant Affairs Program | (212) 335-3600 |
| Queens District Attorney's Immigrant Affairs Program | (718) 286-6690 |
| Office of New Americans Hotline | (212) 419-3737 또는 (800) 566-7636 |

이민지원 서비스 규제법(IMMIGRANT ASSISTANCE SERVICE ENFORCEMENT ACT)

2014 년, 이민지원 서비스 규제법이 뉴욕 주 법으로 입법되어, 뉴욕 주에서 이민지원 서비스를 받는 사람에 대한 법적보호가 강화되었습니다.

이민지원 서비스 규제법은 다음과 같은 작용을 합니다.

- 이민항소위원회(Board of Immigration Appeals, BIA)의 인가를 받은 변호사와 개인 혹은 단체만이 이민자에게 법률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는 것을 명시
- 이민지원 서비스를 위한 번역 요구조건을 강화
- 이민지원 서비스 제공자가 사용하는 서명과 계약서에 대한 추가적 요구조건을 창설
- 이민자에게 사기를 친 사람에 대한 형벌을 창설하고 민사벌칙을 강화
- 이민자가 법률서비스와 ESOL, 시민교실과 직업훈련 및 여타 지원을 받는 것을 도와주기 위하여 그 공식 집행기관으로 새로운 미국인을 위한 뉴욕사무소(New York State Office of New Americans)를 설립

만약 이민지원 서비스 규제법과 이민 서비스 및 보호에 관하여 상세하게 알려면, 1 (800) 566-7636 으로 New Americans Hotline 사무소에 전화하십시오.

맨해튼 검찰청의 이민 사건 프로그램

맨해튼 검찰청은 이민자들을 상대로 한 범죄를 전담하는 이민 사건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영주권, 시민권, 주택, 직장을 구하는 이민자들이 종종 다양한 사기에 의한 피해를 입고 있습니다. 이민 사건 프로그램은 이민 신분 때문에 법집행 기관과 협력하기 꺼려하는 사람을 포함하여, 합법적 이민과 비합법적 신분의 피해자와 증인을 도와 주고 지원합니다. 이민 신분과 상관없이 이민 사기와 그 밖의 범죄의 피해자와 증인은 이민 사건 프로그램에 범죄 사실을 신고할 수 있습니다. 사기의 피해자는 그들에 속한 금전을 복구할 수 있습니다. 피해자와 증인의 이민 신분을 이민담당 관리에게 통보하지 않는 것이 맨해튼 검찰청의 방침입니다.

맨해튼 이민사건 프로그램에 사기와 여타 범죄에 관한 정보를 신고하거나 제공하려면 (212) 335-3600 으로 전화하거나(여러 언어의 통역이 대기되어 있습니다.) Immigrant Affairs Program, One Hogan Place, Room 753A New York, NY 10013 으로 서면 통보하십시오.

브루클린 구역 검찰청 이민 사기반(IMMIGRANT FRAUD UNIT)

맨해튼 구역 검찰청의 이민사건프로그램과 유사하게, 브루클린 구역 검찰청에는 이민자 사회의 필요성에 중점을 두고 이민자에게 행하여지는 사기와 기타 범죄로부터 보호를 전담하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브루클린의 이민 사기반에 사기와 여타 범죄에 대하여 정보를 신고하거나 제공하려면 (718) 250-3333 으로 전화하거나(여러 언어의 통역이 대기되어 있습니다.)

IIFU@BrooklynDA.org 의 주소로 이메일을 보내거나 Immigrant Fraud Unit, 350 Jay Street, 16th Floor, Brooklyn, NY 11201 로 서면 통보하십시오.

퀸즈 구역 검찰청 이민 사건반(OFFICE IMMIGRANT AFFAIRS UNIT)

퀸즈 구역 검찰청에도 사기와 폭력 등 이민자에 대한 범죄를 기소하기 위한 이민 사건반이 있습니다.

퀸즈의 이민 사건반에 사기와 여타 범죄에 대하여 정보를 신고하거나 제공하려면 (718) 286-6690 으로 전화하거나(여러 언어로 통역이 대기되어 있습니다.) Immigrant Affairs Unit, 125-01 Queens Boulevard, Kew Gardens, NY 11415 로 서면 통보하십시오.

사기 수법의 예

- 변호사 자격증이 없이 자신을 변호사라고 소개하고 법에 관련된 조언을 하는 개인이나 이민 서비스 제공자
- 연방 이민국의 대리인을 가장하여 특정 서비스나 해결책을 제시하는 사람
- 이민자들에게 취업을 보장한다거나 확보할 수 없는 취업비자를 보장하는 사람
- 정부 기금으로 운영되는 프로젝트에 이민자들을 고용하고 법에 명시된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 건설 회사
- 허위 투자 기회를 제공하거나 다단계회사를 추천하는 사람
- 소셜시큐리티 카드, 자격증, 여권, 그 밖의 서류들을 위조하여 판매하는 사람
- 주택이나 다른 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약속하고 비용만 받아서 잠적하는 사람

다음과 같은 사람들을 주의해야 합니다

- 이민 당국과 특별한 협상이 가능하다는 이민 서비스 제공자
- ‘공증인’(Notario)이 항상 변호사인 것은 아닙니다. 미국에서 ‘공증인’은 대부분 변호사가 아닙니다.
- 이민 당국이나 다른 정부 기관에 송부하는 양식들의 원본이나 복사본을 돌려주지 않는 이민 서비스 제공자들
- 이민 당국에게 귀하를 제보하겠다고 위협하는 이민 서비스 제공자들
- 오직 현금만 받는다는 이민 서비스 제공자들. 지불하는 모든 비용에 대한 영수증을 받아야 합니다.

어느 기관이나 대표자가 이민 항소 위원회(BIA)로부터 승인을 받았는지 여부 그리고 연방 이민 법원에서 고객을 대변할 수 있는지를 알아보기 위해서는 미국 법무부 이민 검토 사무국 웹사이트(<https://www.justice.gov/eoir/recognition-accreditation-roster-reports>)를 방문하십시오.

특정 개인의 뉴욕 주 변호사 자격증 소지 여부를 확인하고 싶으시면 다음의 뉴욕 주 연합 법원 시스템, 변호사 등록 단위로 접속하십시오: 전화(212) 428-2800 혹은 www.nycourts.gov.

법률 서비스와 사회적 서비스 제공자 추천을 위해서는 (800)566-7636 으로 New Americans Hotline 뉴욕 주 사무소에 연락하십시오.

소규모 사업

소규모 사업자들은 어디에서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까?

뉴욕 시 소기업 서비스부(NYC Department of Small Business Services)

뉴욕 시 소기업 서비스부(SBS)는 신규 사업을 시작하려고 하는 사업자나 기업가들에게 직접적 지원을 하는 시 정부의 기관입니다. SBS 는 또한 상업지역의 지역발전을 지원하고 있으며 소수민족이나 여성이 운영하는 사업에 더 많은 기회가 부여되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뉴욕 시 사업애로해소센터(Business Solution Centers)는 SBS 의 서비스들을 각 보로에서 이용하여 뉴욕 시 안에서 사업을 시작하고, 운영하고, 확장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있습니다. 서비스에는 다음과 같은 것이 있습니다.

- 경영 강좌와 사업 계획 수립 교육
- 무료법률 서비스를 하는 변호사들의 계약과 임대차에 대한 법률적 검토
- 정부의 사업 규제 이해 및 요구조건 충족 지원
- 용자업체를 선별하여 패키지 신청을 돕는 재정 지원 서비스
- 이미 선별된 구직자들의 정보를 제공하는 채용 지원 서비스
- 소수민족이나 여성이 운영하는 사업체가 정부와 계약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얻도록 돕는 기업보증서 발급
- 신규 직원의 능력 향상과 사업활동의 질을 증대시키는 교육자금 지원
- 사업이전과 확장 혹은 자본증대에 자금을 절약할 수 있도록 장려금 제공

뉴욕 시 사업애로해소프로그램(Business Solutions Program)에 연락하십시오. 보다 상세한 정보를 원하면, 311 로 전화하거나 <http://www.nyc.gov/html/sbs/nycbiz/html/home/home.shtml> 을 방문하거나 아래 사무소 중 하나를 방문하십시오.

| | |
|--------------------------|---|
| Bronx | 400 East Fordham Road, 7th Floor, Bronx, NY 10458 (718) 960-7910 월~금요일 9:00AM-5:00PM |
| Brooklyn | 9 Bond Street, 5th Floor, Brooklyn, NY 11201 (347) 296-8021 월~금요일, 9:00AM-5:00PM |
| Manhattan (Lower) | 79 John Street, 2nd Floor, New York, NY 10038 (212) 618-8914 월~금요일, 9:00AM-5:00PM |

| | |
|--------------------------|--|
| Manhattan (Upper) | 361 West 125th Street, 2nd Floor, New York, NY 10027 (212) 749-0900(내선: 125) 월~금요일, 9:00AM-5:00PM |
| Queens | 168-25 Jamaica Avenue, 2nd Floor, Jamaica, NY 11432 (718) 577-2148 월~금요일, 8:30AM-5:00PM |
| Staten Island | 120 Stuyvesant Place, 3rd Floor, Staten Island, NY 10301 (718) 285-8400 <i>사전 약속 필요</i> |

사업 지원 센터(BUSINESS OUTREACH CENTERS, BOCS)

사업체 소유자들은 또한 사업 지원 센터(Business Outreach Centers, BOC) 프로그램의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뉴욕 시 전역에 위치한 BOC 에서는 사업 전문 상담가들이 귀하에게 다음과 같은 분야와 관련된 상담을 하고 있습니다.

- 창업과 확장
- 재정 업무
- 사업 계획 작성
- 경영관리와 법률 지원
- 자격증과 허가 안내
- 상품 가격 책정

다음 사업지원센터(BOC) 사무소에 연락하십시오.

| | |
|---|---|
| Business Outreach Center Network, Inc. Central Office | 85 South Oxford Street, 2 nd Floor Brooklyn, NY 11217 (718) 624-9115 info@bocnet.org |
| Bronx | 1231 Lafayette Avenue, 2 nd Floor Bronx, NY 10474 (718) 532-2926 bronxboc@bocnet.org |
| Queens | 96-11 40 th Road, Ground Floor Corona, NY 11368 (718) 205-3773 queens@bocnet.org |
| Chinatown/Lower East Side Business Outreach Center CMP (기존에는 Chinatown Manpower Project) | 70 Mulberry Street, 3 rd Floor New York, NY 10013 (212) 571-1692 chinatown@bocnet.org |

| | |
|---|--|
| Upper Manhattan Business Outreach Center Washington Heights and Inwood Development Corporation | 57 Wadsworth Avenue (corner of 176th St) New York, NY 10033-7048 (212) 795-1600 uppermanhattan@bocnet.org |
|---|--|

또한 BOC 에서 후원하는 신규 '미국식 사업' 난민 영세업 프로젝트("Business American-Style" Refugee Microenterprise Project)는 다음과 같습니다.

- 난민 신분의 사람들이나 망명자들이 뉴욕 시에서 소규모 사업을 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 단기/장기 기업가 연수와 일대일 사업상담을 제공하고, 최대 \$15,000 까지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 이 프로젝트는 난민자, 망명자, 쿠바인 입국자, 아이티인 입국자, 베트남 출신 미국 혼혈인, 그리고 이와 같은 이민 신분이었던 적법한 영주권자들과 같이 특별한 이민 신분을 가진 사람들을 위해 기획되었습니다.

| | |
|---|----------------------------------|
| 신규 "미국식 사업" 난민 영세업 프로젝트("Business American-Style" Refugee Microenterprise Project)는 다음과 같이 연락하십시오. | |
| BOC Network, Inc. | (718) 624-9115(스페인어, 아이티어, 프랑스어) |
| Staten Island BOC | (718) 816-4775 |
| South Brooklyn BOC | (718) 253-5262(러시아어) |
| Met Council on Jewish Poverty (Queens) | (718) 275-5316(러시아어) |

퀸즈-라과디아 소규모 사업 개발 센터(QUEENS-LAGUARDIA SMALL BUSINESS DEVELOPMENT CENTER)

퀸즈-라과디아 소규모 사업 개발 센터 역시 사업 계획, 재정, 자격증 취득과 정부 규제 대응, 상품 수출과 서비스 등에 대해 도움을 주는 기관입니다.

퀸즈-라과디아 소규모 사업개발센터는 우편 또는 방문(30-20 Thomson Avenue, Suite B309, Long Island City, NY 11101), 전화((718) 482-5303) 또는 이메일(laguardia.nyssbdc.org)로 연락할 수 있습니다. (약속은 온라인 혹은 직접 잡을 수 있습니다.)

미국 소기업청(SMALL BUSINESS ADMINISTRATION, SBA)

미국 소기업청은 소규모 기업에 지원을 해주는 연방 정부 기관입니다. 이 기관에서는 다음과 같은 지원을 제공합니다.

- 기술지원(연수 및 상담)
- 재정 지원
- 계약 지원
- 재해 피해 복구 지원
- 법률, 규제 이해 지원

SBA 의 뉴욕 사무소는 우편 또는 방문(26 Federal Plaza, Suite 3100, New York, NY 10278), 전화(212) 264-4354 또는 이메일(www.sba.gov/offices/district/ny/new-york)로 연락할 수 있습니다.

소수민족과 여성 경영기업 및 불리한 상황의 기업이 뉴욕 시와 사업을 하는 것을 돕기 위한 프로그램으로는 어떤 것이 있는가?

뉴욕 시 보증 프로그램은 소수민족과 여성이 경영하는 기업과 불리한 상황의 기업을 지원하는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시의 조달절차에서의 공정성과 형평성을 추구합니다. 보증을 받은 기업은 계층별, 네트워킹 이벤트와 대상별로 계약을 할 수 있는 사업접근과 정보를 가지게 됩니다. 보증 프로그램에는 다음이 포함됩니다.

- **소수민족과 여성 경영기업(Minority and Women-owned Business Enterprise, M/WBE) 프로그램** 흑인, 히스패닉, 아시안 아메리칸 혹은 여성 등 특정 소수민족에 속하는 미국 시민권자 혹은 영주권자가 최하 51% 이상을 소유하고 경영하는 기업이 대상임
- **신흥 사업 기업(Emerging Business Enterprise, EBE) 보증 프로그램** 사회적, 경제적으로 불리한 사람이 소유하는 기업이 대상임. 수 차례 미국 주류사회로의 진입이 실패하였고, 그 결과 실질적인 사회적, 경제적 불리한 상황을 가져온 것을 입증하여야 함
- **지역 기반 사업체(Locally-Based Business Enterprise, LBE) 보증 프로그램**

뉴욕 주에서 사업을 하는 것이 허가된 기업으로서, 여러 자격 중에서도 그 사업의 최소 25%가 뉴욕 시에서 낙후된 지역에서 이루어지거나, 그 노동력의 최소 25%를 경제적으로 불리한 근로자를 채용하는 기업이 대상임

뉴욕 소기업 서비스부(SBS)는 모든 프로그램 참가 기업에 보증을 부담합니다.

보증을 신청하기 위한 보다 자세한 정보는 뉴욕 소기업 서비스부(NYC Small Business Services)에 (212) 513-6311 로 전화하거나 그 웹사이트 <http://www.nyc.gov/html/sbs/nycbiz/html/contact/contact.shtml> 를 방문하십시오.

리소스 디렉토리

아래는 본 안내서에서 밝힌 단체, 정부기관, 여타 리소스를 취합한 것으로 이민자들에게 필요시 많은 도움을 줄 것입니다. 이 사무소와 리소스는 필요성에 따라 그룹별로 정리되었으며, 연락처 정보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 시민권 | |
|------------------------------|---|
| CUNY Citizenship Now! | 본사: (646) 344-7245 |
| Immigration Centers | <p>York College Welcome Center Atrium 94-20 Guy R. Brewer Blvd. Jamaica, NY 11451 (718) 262-2983</p> <p>Flushing Immigration Center 39-07 Prince Street, Suite 2B Flushing, NY 11354 (718) 640-9223</p> <p>City College Immigration Center North Academic Ctr., 1-206, 160 Convent Avenue New York, NY 10031 (212) 650-6620</p> <p>CUNY Express 560 W. 181st Street New York, NY 10033 (212) 568-4692</p> <p>Hostos Community College 427 Walton Street, T-501 Bronx, NY 10451 (718) 518-4395</p> <p>College of Staten Island, El Centro and Project Hospitality Immigration Center at The Help Center 514 Bay Street Staten Island, NY 10304 (718) 448-3470</p> <p>Medgar Evers College Immigration Center 1150 Carroll Street, Room 226</p> |

| 시민권 | |
|---|--|
| | Brooklyn, NY 11225 (718) 270-6292 |
| MinKwon Center for Community Action Immigration Legal Services | 136-19 41 st Avenue, 3 rd Fl. Flushing, NY 11355 (718) 460-5600 **제한적인 언어 통용 |
| New York City Bar Association Legal Referral Service | (212) 626-7373 (English) (212) 382-7374 (Spanish) |
| New York Immigration Hotline | (212) 419-3737 혹은 (800) 566-7636 |
| Immigrant Defense Project(범죄자 접촉의 영향에 관한 정보) | (212) 725-6422 http://www.immdefense.org/ |
| Northern Manhattan Coalition for Immigrants Rights, Free Assistance with Citizenship Applications and Exam Preparation | (212) 718-0355 x305 |
| Selective Service | (888) 655-1825 www.sss.gov |
| USCIS Customer Service | (800) 375-5283 혹은 (800) 870-3676 USCIS 양식을 우편으로 요청하려면 www.uscis.gov |

| 영사관 | |
|--------------------------|---|
| 뉴욕 시 전체 영사관 목록 | http://www.citidex.com/252.htm |
| 뉴욕 시 방글라데시 영사관 | 34-18 Northern Blvd Long Island City, NY 11101 (212) 599-6767 |
| 뉴욕 시 중국 영사관 | 520 12th Avenue New York, NY 10036 (212) 244-9392 |
| 뉴욕 시 콜롬비아 영사관 | 10 East 46 Street New York, NY 10017 (212) 798-9000 |
| 뉴욕 시 도미니카 공화국 영사관 | 1501 Broadway, Suite 410 New York, NY 10036 (212) 768-2480 |
| 뉴욕 시 에쿠아도르 영사관 | 800 Second Avenue, Suite 600 New York, NY 10017 |

| | |
|-------------------|---|
| | (212) 808-0170 |
| 뉴욕 시 가이아나 영사관 | 308 West 38th Street New York, NY 10018 (212) 947-5110 |
| 뉴욕시 아이티 영사관 | 815 2nd Avenue, 6th Floor New York, NY 10017 (212) 697-9767 |
| 뉴욕 시 인도 영사관 | 3 East 64th Street New York, NY 10065 (212) 774-0600 |
| 뉴욕 시 자메이카 영사관 | 767 Third Avenue, 2nd & 3rd Floors New York, NY 10017 (212) 935-9000 |
| 뉴욕 시 대한민국 영사관 | 460 Park Avenue New York, NY 10022 (646) 674-6000 |
| 뉴욕 시 멕시코 영사관 | 27 East 39th Street New York, NY 10016 (212) 217-6430 |
| 뉴욕 시 필리핀 영사관 | 556 5th Avenue New York, NY 10036 (212) 764-1330 |
| 뉴욕 시 러시아 영사관 | 9 East 91 Street New York, NY 10128 (212) 534-3782 |
| 뉴욕 시 트리니다드토바고 영사관 | 125 Maiden Lane, Unit 4A, 4th Floor New York, NY 10017 (212) 682-7272 |
| 뉴욕 시 우크라이나 영사관 | 240 East 49th Street New York, NY 10017 (212) 371-6965 |

| 소비자&금전적 권리 | |
|--|--|
| NYC Department of Consumer Affairs (DCA) | 311 www.nyc.gov/consumers |
| DCA Office of Financial Empowerment | 311 http://www1.nyc.gov/site/dca/partners/financial-empowerment.page |
| Neighborhood Economic Development Advocacy Project (NEDAP) | 212-680-5100 |

| 추방과 구금 | |
|---|---------------------------------------|
| Bronx Defenders | (718) 838-7878 |
| Executive Clemency Unit New York State Division of Parole | 97 Central Avenue Albany, NY 12206 |
| Families for Freedom | (646) 290-5551 |
| Immigrant Defense Project | (212) 725-6422 |
| Immigration and Customs Enforcement | NY: (212) 264-4213 NJ: (973) 645-3666 |
| Legal Aid Immigration Law Unit | (212) 577-3456 <i>수요일, 금요일 오후</i> |
| Northern Manhattan Coalition for Immigrant Rights | (212) 781-0355 x305 |

| 가정폭력 | |
|--|---|
| Domestic Violence Hotline | (800) 621-HOPE (800) 621-4673 |
| New York State Child Abuse Hotline | (800) 342-3720 |
| NYC Services for Domestic Violence Victims | 311 www.nyc.gov/domesticviolence |
| Safe Horizon Domestic Violence Hotline | (800) 621-HOPE (4673) |

| 교육 | |
|---|---|
| Advocates for Children | (212) 947-9779 혹은 (866) 427-6033 |
| Department of Education (DOE) Division of Family & Community Engagement | (212) 374-2323 http://schools.nyc.gov/Offices/FACE/default.htm |
| DOE Community Education Councils | (212) 374-2323 schools.nyc.gov/Offices/CEC |
| DOE Office of Pupil Transportation | (718) 392-8855 www.optnyc.org |
| DOE New Students- Choices & Enrollment | http://schools.nyc.gov/ChoicesEnrollment/default.htm |
| Inside Schools | (866) 427-6033 www.insideschools.org |
| Legal Services for New York City | (212) 431-7200 |
| Mexican American Legal Defense and Education Fund | http://www.maldef.org/assets/pdf/1415_MALDEF_Scholarship.pdf |

| | |
|---|---|
| Students Opening Doors for Others | http://www.neighborhoodlink.com/Students_Opening_Doors_For_Others_SODO/pages/456022 |
| NYC Administration for Children's Services (ACS) Vacancy Information | 311 혹은(212) 853-7150 |
| NYC Chancellor's Regulation A-443: Student Discipline | http://schools.nyc.gov/RulesPolicies/ChancellorsRegulations/default.htm |
| NY Legal Assistance Group | (212) 613-5000 |

행정명령 41

| | |
|--|-----|
| Mayor's Office of Immigrant Affairs | 311 |
|--|-----|

건강관리

| | |
|---|--|
| Health & Hospitals Corporation: Community Advisory Boards (CABs) | (212) 788-3349 www.nyc.gov/hhc |
| HRA Medicaid Help Line | (888) NYC-6116 |
| NYC Human Rights Commission | 311 혹은(212) 306-7450 |
| US Department of Health & Human Services Office for Civil Rights | (212) 264-3313 |

주택

| | |
|---|--|
| MinKwon Center for Community Action Homeless Prevention Services | 136-19 41 st Avenue, 3 rd Floor Flushing, NY 11355 (718) 460-5600 **제한된 언어 통용 |
| NYC Commission on Human Rights | (718) 722-3131 |
| NYC Department of Homeless Services | (800) 994-6494 |
| NYC Department of Housing Preservation and Development | 311 |
| New York State Division of Housing and Community Renewal | (718) 739-6400 |

| 이민상담 사기 | |
|---|--|
| Board of Immigration Appeals (BIA) | www.usdoj.gov/eoir |
| Manhattan District Attorney's Office Immigrant Affairs Program | One Hogan Place, Rm 753A New York, NY 10013 (212) 335-3600 |
| Brooklyn District Attorney's Office Immigrant Fraud Unit | 350 Jay Street, 16th Floor Brooklyn, NY 11201 (718) 250-3333 |
| Queens District Attorney's Office Immigrant Affairs Unit | 125-01 Queens Boulevard Kew Gardens, NY 11415 (718) 286-6690 |
| NYC Department of Consumer Affairs (DCA) | 311 www.nyc.gov/consumers |
| NY Immigration Hotline | (212) 419-3737 혹은 (800) 566-7636 |
| New York State Attorney General's Office | (800) 771-7755 |
| New York State Unified Court System, Attorney Registration Unit | (212) 428-2800 www.nycourts.gov |

| 언어 이용 | |
|-------------------------------------|-----|
| Mayor's Office of Immigrant Affairs | 311 |

| 영주권 | |
|---|----------------------------------|
| Mayor's Office of Immigrant Affairs and Congressional Offices | 311 |
| NY Immigration Hotline | (212) 419-3737 혹은 (800) 566-7636 |

| 공공 혜택 | |
|-------------------------------|---|
| NYC Housing Authority (NYCHA) | <p>Bronx/Manhattan 478 E. Fordham Rd., 2nd Fl. Bronx, NY 10458 (718) 707-7771</p> <p>Brooklyn/Staten Island 787 Atlantic Ave. 2nd Fl. Brooklyn, NY 11238 (718) 707-7771</p> |

| | |
|---|--|
| | <p>Queens 90-27 Stuphin Blvd., 4th Fl. Jamaica, NY 11435 (718) 707-7771</p> <p>Mail Public Housing and Section 8 Applications to NYCHA P.O. Box 1342 Church Street Station New York, NY 10008</p> |
| NYC Human Resources Administration (HRA) Food Stamp Offices | 311 혹은 http://www1.nyc.gov/site/hra/locations/snap-locations.page |
| HRA Job Center Sites | 311 혹은 http://www1.nyc.gov/site/hra/locations/job-locations.page |
| HRA Temporary Cash Assistance | 311 혹은 http://www1.nyc.gov/site/hra/help/cash-assistance.page |
| MinKwon Center for Community Action Public Benefits Services | 136-19 41 st Avenue, 3 rd Fl. Flushing, NY 11355 (718) 460-5600 **제한된 언어 통용 |
| U.S. Social Security Administration (SSA) | (800) 772-1213 |

| 소기업 | |
|----------------------------------|---|
| Business Outreach Centers | <p>Central Office: North Brooklyn 85 South Oxford Street, 2nd Fl. Brooklyn, NY 11217 (718) 624-9115 northbrooklyn@bocnet.org info@bocnet.org</p> <p>Bronx 866 C Hunts Point Avenue Bronx, NY 10474 (718) 842-8888 huntspoint@bocnet.org</p> <p>Chinatown/LES Chinatown Manpower Project 70 Mulberry Street, 3rd Fl.</p> |

소기업

| | |
|---|---|
| | <p>New York, NY 10013 (212) 571-1692 Chinatown@bocnet.org</p> <p>Queens 96-11 40th Road, Ground Fl., Corona, NY 11368 (718) 205-3773 queens@bocnet.org</p> <p>South Brooklyn 1546 Coney Island Avenue, Suite 2 Brooklyn, NY 11230 (718) 253-5262 southbrooklyn@bocnet.org</p> <p>Staten Island West Brighton Community Local Development Corporation 1207 Castleton Avenue Staten Island, NY 10310 (718) 816-4775</p> <p>Upper Manhattan Washington Heights and Inwood Development Corporation 57 Wadsworth Ave. (176th St) New York, NY 10033 (212) 795-1600 uppermanhattan@bocnet.org</p> |
| <p>New “Business American-Style” Refugee Microenterprise Project</p> | <p>BOC Network (Central Office) (718) 624-9115</p> <p>Staten Island BOC (718) 624-9115</p> <p>South Brooklyn BOC (718) 253-5262</p> <p>Met Council on Jewish Poverty (212) 453-5262</p> |
| <p>LaGuardia Small Business Development Center</p> | <p>30-20 Thomson Ave. Suite B309 Long Island City, NY 11101 (718) 482-5303 혹은 www.nyssbdc.org</p> |
| <p>Met Council on Jewish Poverty</p> | <p>80 Maiden Lane, 21st Fl. New York, NY 10038 (212) 453- 9500 (러시아어)</p> |
| | |

| 소기업 | |
|--|--|
| NYC Business Solutions Programs | 311 www.nyc.gov/sbs |
| NYC Business Solutions Center Offices | <p>Bronx 358 East 149th St, Bronx, NY 10455 (718) 960-7988</p> <p>Brooklyn 9 Bond Street, 5th Fl., Brooklyn, NY 11201 (718) 875-3400</p> <p>Lower Manhattan Operated by Seedco 79 John Street, New York, NY 10038 (212) 618-8914</p> <p>Upper Manhattan Operated by Seedco 215 W. 125th St, 6th Fl., New York, NY 10027 (917) 493-7243</p> <p>Queens 168-25 91st Ave., 2nd Fl., Jamaica, NY 11432 (718) 577-2150 화, 목, 금요일 오전 8:30- 오후 5:00</p> |
| NYC Department of Consumer Affairs | 311 www.nyc.gov/consumer |
| NYC Department of Consumer Affairs Citywide Licensing Center | (212) 487-4436 |
| NYC Department of Small Business Services | (800) U-ASK-SB 혹은 (800) 827-5722 www.nyc.gov/sbs |
| US Small Business Administration – New York District Office | 26 Federal Plaza, Suite 3100, New York, NY 10278 (212) 264-4354 https://www.sba.gov/offices/district/ny/new-york |

| 세금 신고 | |
|---|---|
| Earned Income Tax Credit | 311 www.nyc.gov/eitc |
| NYC Department of Consumer Affairs | 311 www.nyc.gov/consumer |
| Internal Revenue Service Taxpayer Assistance Center | (800) TAX-FORM (829-3676) |
| Individual Taxpayer Identification Number (ITIN) | www.irs.gov/pub/irs-pdf/fw7.pdf (영어) |

| | |
|---|--|
| Application | www.irs.gov/pub/irs-pdf/fw7sp.pdf (스페인어) |
| Mail Applications to: IRS Austin Service Center ITIN Operation | IRS Austin Service Center ITIN Operation P.O. Box 149342 Austin, TX 78714-9342 |

| 선거 및 시정 참여 | |
|---|--|
| Mayor's Community Assistance Unit | 311 |
| NYC Board of Elections Offices | <p>Main Office 32 Broadway, 7th Fl., New York, NY 10004-1609 (212) 487-5300 (866) VOTE-NYC (868-3692) (212) VOTE-NYC (868-3692) www.vote.nyc.ny.us</p> <p>Absentee Ballot Request: www.vote.nyc.ny.us/absentee.html</p> <p>Manhattan Office 200 Varick Street, 10th Fl., New York, NY 10014 (212) 886-2100</p> <p>Bronx Office 1780 Grand Concourse, 5th Fl., Bronx, NY 10457 (718) 299-9017</p> <p>Brooklyn Office 345 Adams Street, 4th Fl., Brooklyn, NY 11201 (718) 797-8800</p> <p>Queens Office 126-06 Queens Blvd., Kew Gardens, NY 11415 (718) 730-6730</p> <p>Staten Island Office 1 Edgewater Plaza, 4th Fl., Staten Island, NY 10305 (718) 876-0079</p> |
| New York Public Interest Research Group (NYPIRG) | (212) 349-6460 |

| 근로자 권리 | |
|--|---|
| US Equal Employment Opportunity Commission (EEOC) | 33 Whitehall Street, New York, NY 10004 (800) 669-4000 |
| Girls and Educational Mentoring Services ("GEMS") | (212) 926-8089 |

| 근로자 권리 | |
|---|---|
| Legal Aid Society Employment Law Project | (888) 218-6974 |
| Minkwon Center for Community Action Worker's Rights Legal Services | 136-19 41st Ave. 3 rd Fl., Flushing, NY 11355 (718) 460-5600 **제한된 언어 통용 |
| MFY Legal Services | (212) 417-3838 <i>월요일 및 화요일: 오후 2~5 시</i> |
| NYC Commission on Human Rights | 40 Rector Street, 10 th Floor New York, NY 10006 (212) 306-7450 or 311 |
| NYC Comptroller | (212) 669-3916 |
| NYC Department of Small Business Services | 311 |
| NYC Workforce 1 Career Centers | Bronx 400 East Fordham Road, Bronx, NY 10458 Brooklyn 9 Bond St, 5 th Fl., Brooklyn, NY 11201 Brooklyn Central Library 10 Grand Army Plaza, 2 nd Fl., Brooklyn, 11238 Far Rockaway 1637 Central Avenue, Far Rockaway, NY 11691 Upper Manhattan 215 West 125 th St, 6 th Fl., New York, NY 10027 Queens 168-25 Jamaica Ave., 2 nd Fl., Jamaica, NY 11432 Staten Island 60 Bay Street, Staten Island, NY 10301 |
| New York Committee for Occupational Safety and Health (NYCOSH) | (212) 227-6440 www.nycosh.org |
| New York County (Manhattan) District Attorney's Office, Sex Crimes Unit | (212) 335-9373 |
| New York Immigration Coalition | (212) 627-2227 |
| New York State Attorney General's Office Labor Division | (212) 416-8700 |
| New York State Department of Labor Bureau of | (877) 466-9757 |

| 근로자 권리 | |
|---|--|
| Immigrant Workers' Rights | |
| New York State Department of Labor Bureau of Public Works | (212) 775-3568 |
| New York State Division of Human Rights | One Fordham Plaza, 4 th Floor, Bronx, NY 10458 (718) 741-8400 |
| New York State Department of Labor Division of Labor Standards | 75 Varick Street, New York, NY 10013 (212) 775-3880 |
| New York State Department of Labor Unemployment Insurance Division | 아래 전화 혹은 웹사이트로 제기 바람. (888) 209-8124 http://www.labor.ny.gov/unemploymentassistance.shtm |
| National Human Trafficking Resource Center | (888) 373-7888 |
| US Department of Labor OSHA Regional Office | 201 Varick Street, Room 670 New York, NY 10014 (212) 337-2378 혹은 (800) 321-6742 (긴급전화번호) |
| US Department of Labor OSHA Manhattan Office | 201 Varick Street, Room 908 New York, NY 10014 (212) 620-3200 |
| US Department of Labor, Wage & Hour Division | New York City District Office 26 Federal Plaza, Rm 3700, New York, NY 10278 (212) 264-8185 혹은 (866) 487-9243 Brooklyn Area Office 2 Metro Tech Center, 7 th Fl., 100 Myrtle Ave Brooklyn, NY 11201 |
| Workers' Compensation Board | (800) 877-1373 Brooklyn 111 Livingston St., 22 nd Fl., Brooklyn, NY 11201 Bronx/Manhattan 215 W. 125 th St., New York, NY 10027 Queens 168-46 91 st Avenue, Jamaica, NY 11432 Staten Island 60 Bay Street, Staten Island, NY 10301 |





New York City Comptroller
Scott M. Stringer

Municipal Building • 1 Centre Street, 5th Floor • New York, NY 10007
Phone (212) 669-3500 • Fax (212) 669-8878
www.comptroller.nyc.gov